

2015-08 책임연구보고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

김 학 신

POLICE
SCIENCE
INSTITUTE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실태와 한계	9
제1절 범죄 피해자의 개념과 심리	9
1. 범죄 피해자의 개념	9
2.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형성과 국제적 흐름	12
3. 범죄피해자의 심리	13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활동	17
1.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 및 정책	17
2.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의 예산상 한계	20
제3절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	22
1.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개념	22
2.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체계 및 역할	23
3. 범죄 피해자의 통지 제도	30
제4절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32
1.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대상	32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유형별 상담 및 출동 현황	34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현황	37

제3장 일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41
제1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41
1.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배경	41
2. 일본의 범죄피해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	42
3.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46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	52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52
2. 일본의 범죄피해자 연락 제도	53
3.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방문과 익명전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	55
4. 경찰관에 의한 상담과 카운슬링 체제의 정비	55
제3절 일본의 범죄피해급부제도(犯罪被害給付制度)	56
1. 범죄피해급부제도(犯罪被害給付制度)의 개요	56
2. 범죄피해급부의 대상 범죄	58
3. 범죄피해급부금의 종류와 액수, 신청 제한	59
제4절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부담의 경감	61
1.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	61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설 등 정비 개선	62
3.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한 지정피해지원요원 제도	63
제5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65
1.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全国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	65
2.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민간피해자 지원단체	65
3.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早期援助団体)	66
4. 경찰과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홍보 구축	67

제4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활동상 문제점	68
제1절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운영상 문제	68
1. 피해자보호 전담 부서의 인력 배치상 문제	68
2. 피해자보호 전담 배치기준의 문제	70
3. 피해자보호 시스템상의 문제	71
제2절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임무활동상 문제	72
1.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에 따른 예산의 전무(全無)	72
2.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의 부족	74
3. 피해자 지원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있어 한계점	75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개선 방안	77
제1절 피해자 전담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보호·지원	77
1. '웨어러블 호출기'로 활용한 피해자 신변 보호의 정착	77
2.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배치기준의 개선 및 정원 반영	79
3.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	81
4.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교육 역량 강화	82
제2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	84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확대	84
2. 구상권 행사를 통한 적극적 회수율 확보	87
3. 실효성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	88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 제도의 도입 제고	90
5. 범죄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구축	93
6.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94

제6장 결 론	96
참고문헌	99

표 목 차

<표 1> 경찰의 기능별 피해자 보호 대책	19
<표 2> 2015년 기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총 사업비 824억 8천만원) ...	21
<표 3>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배치	25
<표 4> 피해자 전담경찰관 배치현황(1급지 기준)	26
<표 5>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	28
<표 6> 범죄피해자 상담 및 출동 건수(2015. 2-8월 기준)	35
<표 7> 경제적·심리적·법률적 건수(2015. 2-8월 기준)	38
<표 8>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 연혁	49
<표 9> 일본의 범죄피해급부제도의 신청피해자 수 및 신청건수	59
<표 10> 연도별 보복범죄 현황(2010-2015.7)	77
<표 11> 범죄피해구조금 액수의 증가	85

그림 목 차

<그림 1> 범죄 피해자의 심리상태 변화	15
<그림 2> 사건·사고 직후, 조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	16
<그림 3> 장기간 지속되는 심적 문제	16
<그림 4> 일본의 2차적 피해 상황	43
<그림 5> 일본에서 범죄 피해 직후의 정신상태	45
<그림 6> 일본의 범죄피해자 안내서	52
<그림 7> 일본의 피해자연락제도의 개요	54
<그림 8> 일본의 범죄 피해자 상담	56
<그림 9> 일본의 범죄피해자급부금	6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조 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 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같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그 구조를 해 주는 제도는 외국에서는 그 입법례가 많지 않다.

제6공화국 헌법이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국가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견지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법」²⁾은 국가배상적 성격을 강조한 것 같다.³⁾

1) 형사법학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에 대하여 국가의무설, 사회복지설, 일종의 사회보험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중 국가의무설은 국가책임설로서 국가배상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고, 사회복지설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강조한 것이다. 金哲洙, 憲法學新論, (第20全訂新論), 博英社, 2010, 1066쪽.

2)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987. 11. 28. 제정되었고, 1988. 7. 1. 부터 시행하였다. 국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강력사범이 증가하고 범죄 양태도 흉폭·다양해지고 있어 그 피해자도 날로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行法 체계하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흠함을 보완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처럼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나 유족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⁴⁾

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동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동법 제15조)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17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법은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데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범죄로 희생을 당한 자나 그 유족이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가 그 생계의 일부나마 부조해 준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법률의 제명 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법률의 제명을 정함에 있어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구조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 3)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 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범죄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원초적인 행위 자체를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1항 및 제30조(이 사건과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 1989. 4. 17. 선고, 88 헌마 3, 현재판례집 제1권, 31면 이하.
- 4) 범죄피해자보호법은 2005. 12. 23. 제정되고, 2006. 3. 24. 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동 법률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2010년 5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동 법률에 통합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였다.⁵⁾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되어, 범죄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등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2015년 4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대비 약 33.3%정도 대폭 인상하였다.

즉,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범죄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⁶⁾

이처럼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제도는 제25회 유럽 피해자지원협회(Victim Support Europe, VSE)⁷⁾ 연례회의에서 기초 연설국으로

5)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조금액을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고,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하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다.

6)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의 경우 최대 약 9,100만원, 장애·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최대 약 7,6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법무부,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폭 확대, 2015. 3. 10 보도자료 참조.

7) 피해자지원협회(Victim Support Europe, VSE)는 1990년 유럽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구가 모여 설립한 모임이다. 범죄피해자 정책과 관련해 국제연합(UN)과 유럽회의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EU)에서 5년마다 피해자보호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2년 11월 제5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통하여 VSE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VSE 회원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민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회원국으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초청되어⁸⁾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성공 모델로 선정하여 2015년 자체 연례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피해자지원에 관한 국제적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히 피해자지원협회(VSE) 연례회의에서 외국의 가장 관심을 받은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의 법제화였다.⁹⁾ 즉,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의 법제화 등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발표하였다.

또한 피해자지원협회(VSE) 회원국들은 범죄피해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¹⁰⁾의 치료 효과와 구조금·치료비·긴급생계비 등을 넘어 주거 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영국,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몰타, 이탈리아, 스페인, 세르비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폴란드이다. 현재 EU의 재정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 등 2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이다. 박지연, 한국의 '피해자 미란다 원칙', 유럽에 소개, 법무부, 법률신문, 2015. 5. 18; 법무부,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세계적 성공모델로 소개, 2015. 5. 14 보도자료 참조.

- 8) 제25회 VSE 연례회의는 회원국을 순환하며 열리며, 2015년은 '유럽 범죄피해자의 권리'(Right of Victim Of Crime In Europe : the future in now)"라는 회의명으로 '15. 5. 13.(수) ~ 5. 14.(목)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다.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포르투갈 피해자지원협회가 주최하고, 유럽의회 인권위원장, 유럽인권법원장, 포르투갈 법무부장관·대법원장·검찰총장 등 VSE 회원국 인사 참석하였다. 법무부,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세계적 성공모델로 소개, 2015. 5. 14 보도자료 참조.
- 9) 2015. 4. 16.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는 것이 임의적이었다. 정보제공과 방식은 재판참여 진술권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권리부터, 구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제도, 지원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VSE 회원국들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미란다 원칙'에 비견할만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원칙이 명문으로 도입된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하였다.
- 10)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 전문 심리치료 기관으로 임상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 현황으로 2010년 서울에 설치한 이후 2014년까지 전국 6개 광역시(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중심지로 설치되었고, 2018년까지 전국 18개 주요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심리치료 효과로 2015년 3월까지 26,000건의 심리치료 지원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감을 최대 10으로 환산하여 치료 전 평균 8.9가 치료 후 평균 1.5로 감소하였다. 법무부,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세계적 성공모델로 소개, 2015. 5. 14 보도자료 참조.

이처럼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될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 및 법무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고, 그 안에서 주도 되었다.

그 결과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최근까지의 현실이었다. 특히, 수사·공소·재판 순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경찰단계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첫 관문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큰 시점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¹⁾

실제 사례를 보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우므로 경찰의 도움은 범죄 피해자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단순한 대국민서비스가 아니고, 경찰의 본래의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의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만 한다.¹²⁾

특히,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¹³⁾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

11) 김순석,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의 활성화 방안, 경찰대학·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2014년 공동세미나, 2016. 6. 13, 15-16쪽.

12) 박호정,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2쪽; 김순석, 위의 논문, 16쪽 재인용.

13)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형사사법체계와는 달리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주체로 끌어들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가 회복적 사법과 관련하여 단순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제도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념과 이론적 논의를 넘어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형사사법체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형벌에 기초를 둔 응보적 사법(restitutive justice), 범죄자의 처우에 중점을 두는 배분적 사법(distributive justice), 회복적 사법(resorative justice)이다.

부각되었다.¹⁴⁾ 또한 범죄로 인해 피해 직후 경찰수사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는 발족하였지만,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부족, 지원단체 및 상담시설 연계에 관한 문제, 교육, 홍보 등의 부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통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최대한 확보할 있는 경찰의 역할 즉,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심도있는 인터뷰와 부족한 부분은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해 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내실있는 지원 및 보호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차후 우리 경찰을 통해서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화된 형태의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ustice) 등이 그것이다. 응보적 사법과 배분적 사법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꾀하며, 이 회복 과정에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문제해결의 주체가 된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결국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관련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프로그램은 범죄문제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야기되는 민사상의 갈등, 이혼 등 가정 내의 불화,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차별 등의 문제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장규원, 피해자학 강의, ㈜살림출판사, 2011. 9. 2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992&cid=42136&categoryId=42136>(2015. 10. 20 검색).

14) 이형세,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고찰과 발전방안, 경찰청·(사)코바포럼 공동학술세미나, 2015. 4. 8, 51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의 역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즉,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겪게 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실태와 한계, 그리고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활동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로 그 범위를 정하였다.

특히, 주요 내용은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였음을 밝히며, 더불어 가까운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부분도 한 장으로 분류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따른 실태와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비롯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과 예산상의 한계 그리고 피해자전담 경찰관 제도의 발족과 활동 등을 개괄하였다. 또한 경찰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대상과 지원 실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경찰이 도입 할 수 있는 시사점 등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피해자전담 경찰관들

의 운영상 문제점과 임무활동상 문제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제5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에는 현재 경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우리 전담경찰이 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방안과 새로운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론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변경은 단순히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차후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하나씩 개선되리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보고서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관하여는 현장 경찰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여 전담경찰관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하여 주신 현장 피해자전담 경찰관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제2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실태와 한계

제1절 범죄 피해자의 개념과 심리

1. 범죄 피해자의 개념

전통적인 범죄학은 범죄의 주체인 범죄자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범죄의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범죄학에 대응하는 피해자학이 등장하게 되었다.¹⁵⁾

피해자의 개념에 대하여 사고나 자연재해의 피해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Moedelsohn), 대개 범죄의 직접·간접 피해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형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의 분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원상회복 내지 국가보상제도를 중요한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¹⁶⁾

현행법상 피해자 개념은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방지법)¹⁷⁾」, 「성폭력

15) 피해자학(被害者學)이라함은 범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생물학적·사회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이다. 吳世敬, 法律用語辭典, 法典出版社, 2010. 2, 1014쪽.

16) 吳世敬, 法律用語辭典, 法典出版社, 2010. 2, 1014쪽.

17)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성충동약물치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장치부착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약칭: 범죄신고자법)」 등 많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는 피해자 개념 및 범위는 명백히 정의되어 있지 않지 않으며 보호대상 또는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의 정의에서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5호에서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상의 논의에 있어서도, “피해”를 각 범죄유형에 있어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법익의 침해 또는 위협’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일정한 법익을 침해 또는 위협당한 자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는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를 포함하며,¹⁸⁾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한다.¹⁹⁾

18) 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 헌마 262결정.

19) 오영근·이천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9, 14쪽.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피해자의 개념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보고 있지만,²⁰⁾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경우까지 피해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²¹⁾

이처럼 최근 들어서 피해자의 중요함을 인식하듯이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더불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1항 제1호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²²⁾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및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보통 1차 피해는 범죄로 인하여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폭행·상해 등의 육체적 상처, 그리고 절도·사기 등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이다. 그리고 2차 피해는 범죄피해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주소득원 사망 등으로 경제적인 손해, 수사·재판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시간적인 부담,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한 불쾌감, 피해사실의 노출, 개인정보 유출, 대인관계 악화 등을 말하는데,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는 2차 피해가 없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²⁴⁾

20) 헌법재판소 1992.2.25. 선고 90헌마91결정; 1995.7.21. 선고 94헌마136결정; 1997.2.20. 선고 96헌마76 전원재판부; 2000.9.6. 선고 00헌마550 제2지정재판부.

21) 헌법재판소 1993.3.11. 92헌마306.

22) 여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 한다.

23)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2779호(2014.10.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참조.

24)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14. 2, 10쪽.

2.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형성과 국제적 흐름

선진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²⁵⁾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는 1981년 7월 3일 정부가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의사를 밝힌 것으로부터 시작된다.²⁶⁾

이후 1987년 제9차 헌법이 개정되고,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즉,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즉,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198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원조를 할 수 있도록 1987년 11월 28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23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이 되어 동 법률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이 같아 2010년 5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동 법률에 통합하였다.²⁷⁾

25)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는 B.C 2250년경의 함무라비법전에도 규정되었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멕시코(1929년)와 쿠바(1936년)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입법화된 바 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영국·미국·스위스·스웨덴·독일 등에서 범죄피해자 구조를 법제화하였으며, 일본도 후술하겠지만, 1980년에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을 제정·공포한바 있다. 吳世敬, 法律用語辭典, 法典出版社, 2010. 2, 81쪽.

26) 김순석,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의 활성화 방안, 경찰대학·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2014년 공동세미나, 2016. 6. 13, 17쪽; 정희정,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주요 제문제, 대검찰청, 2014. 3, 3쪽.

국제적으로도 인권의식의 고양을 배경으로 범죄에 의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에 의한 구제·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져 왔다.

1985년 UN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피해자는 그 존엄에 대해 공감과 경의를 갖고 다루어져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역할과 소송의 진행상황, 소송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가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정신적 사회적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경찰, 재판, 의료, 사회복지 등의 관계기관의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행하고 사법상·행정상의 민첩하고 빠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 정비 등을 행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이제 국제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²⁷⁾

27)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증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조금액을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고,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하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다.

28)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3面.

3. 범죄피해자의 심리

범죄 피해자는 그 피해 후의 심리적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다양한 심리 변화를 경험한다.

즉, 범죄 피해는 타인에 의해 갑작스럽고 인위적으로 가해진 만큼 회복하는데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²⁹⁾ 다시 말해 범죄 피해자는 상담 대화나 정신적 지원 위로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³⁰⁾

보통 범죄 피해로 사람은 심리 상태가 변화하는데, 여기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 단계별로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처음 충격이후, 부인과 의문, 그리고 분노, 체념, 수용의 심리 상태로 변화한다.

보통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이상해 보이는 언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피해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실체 파악에 소홀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를 대할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 할 필요가 있다.³¹⁾

29)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14. 2, 10쪽.

30) 2010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에 의하면, 보통 “범죄 피해자들의 62.1%가 정신적 측면에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31)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14. 2, 11쪽.

<그림 1> 범죄 피해자의 심리상태 변화



출처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14. 2, 11쪽.

보통 범죄 사건이나 사고가 있는 직후 조기에 일어나는 인간의 심리적인 반응과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적 문제도 다음 표와 같은 상태로 나타난다. 다음<그림 2>의 사건·사고 직후, 조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으로는 감정의 마비, 분노의 감정 표출, 피해당시의 공포 상기, 피해에 대한 수치심, 자기 자신의 비하, 무력감 등으로 나타난다. 장기간 심적 문제로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그림 3>에서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 사건·사고 직후, 조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

감정의 마비	강간의 피해상황을 담담하게 진술하거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감정의 마비」의 일례이다.
분노의 감정 표출	피해자는 범인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 격한 분노를 지니고 있다. 분노는 때로 「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 당시의 공포 상기	사건·사고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이미 안전이 확보 되었음에도 피해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 무서움을 느끼는 등 이겨내기 힘들 정도의 공포감에 시달린다.
피해에 대한 수치심	피해자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자기 자신 비하	“어두운 밤길을 걸은 내 잘못이다”, “내가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면 아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 자신을 책망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무력감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연속해서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강간 피해자 등에게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출처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14. 2, 12쪽.

<그림 3> 장기간 지속되는 심적 문제

Trauma (심적 외상, 마음의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의 정신적 피해는 경제적 피해보다도 훨씬 커,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 범죄·재해 등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 했거나 신체에 중상을 입는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하면 심리적으로도 심한 상처를 입는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인 여러 증상을 「PTSD」라고 한다. PTSD의 다양한 증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PTSD」증상 : 사건 재경험·회피·우울증·만성 정신분열증 등

출처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14. 2, 12쪽.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활동

1.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 및 정책

오랫동안 우리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강력범죄 등의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은 심리적 고립상태 뿐 아니라 사회부적응 등 고통의 악순환은 반복이 된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우리의 사회적 전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 경찰은 여러 방식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개명신청을 지원하거나,³²⁾ 자동차번호 변경 지원으로 피해자의 신변 노출을 방지하거나,³³⁾ 가정폭력 피해자인 탈북여성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³⁴⁾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

32) 2015년 4월, 직장여성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지인에게 강제로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다니던 직장에서는 피해 소문이 퍼져 실직하게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와 마주칠까봐 경찰서 방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A씨를 위해 외부에서 상담을 하는 등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소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5년 동안 다니던 회사는 퇴사하게 되어,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명을 고민하게 되었고, 경찰은 범죄피해로 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지역 가정법원에서 이름이 변경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시책, 2015. 7. 21 보도자료 참조.

33) 2015년 2월, 수원에 사는 여성 B씨는 이혼한 남편과 재산분할 청구소송 중 전 남편으로부터 폭력배와 합동으로 감금피해를 당한 이후 하루 하루를 불안감에 떨며 지내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범인 검거 이후, 추후 보복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B씨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번호를 변경하여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신변안전을 위해 형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현행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는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 등을 첨부하여 지역차량등록사업소로 공문 발송하여 자동차 번호변경을 지원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시책, 2015. 7. 21 보도자료 참조.

34) 2015년 1월, 동거남의 폭행으로 유산까지 겪은 탈북여성 C씨는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심리회복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홀로서기를 위해 관할 군청과 협조하여 희망키움적금 통장을 개설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꾸준한 취업상담을 연계한 결과, 최근에는 조그마한 닭강정 가게를 개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 희망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등 활동을 위해 심리학 전공자 및 임상경험자 등을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onse, CARE)’으로 총 3회 35명을 특채하였다. 이들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은 중요 강력사건 등 발생시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개입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및 안정유도, 피해자의 심리평가·상담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평사시에는 기히 상담한 피해자의 사후관리, 일선 경찰관 교육·자문, 지원단체와 연락체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은 어느 기관보다 피해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⁵⁾

현재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는 감사, 수사, 여성 청소년 등 각 관련 기능에 분산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 등 정보제공이 재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권리고지 확인서’³⁶⁾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권리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유형에 맞도록 특화된 권리고지서를 사용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왔다. 기능별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키움적금이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상품으로 가입자가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29만 원을(개인별 차이있음) 36개월간 지원하는 복지사업.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시책, 2015. 7. 21 보도 자료 참조.

35) 이형세, 앞의 논문, 52쪽.

36)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 진술권, 수사진행사항 통지,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 5개항의 피해자 권리를 고지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2010년 7월 시행).

〈표 1〉 경찰의 기능별 피해자 보호 대책

기능	추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감사), 특화된 권리고지서(가정폭력·성폭력)사용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온라인 사건조회 서비스(형사사법포털)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 지원³⁷⁾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CARE) 운영
수사 생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통지 활성화 등 정보제공 강화 피해자·신고자의 신변보호 실시 가명조서 작성 대상 확대 피해품 회수활동 적극 전개
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여경 배치,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운영 성폭력 전담수사팀 확대,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학교 전담경찰관 배치 진술조력인,³⁸⁾ 속기사 등 제도 시행 가정폭력솔루션팀 사례 회의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서울청 특수시책)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뺑소니·무보험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보장사업 내용 및 절차 안내
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등)

※ 이형세,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고찰과 발전방안, 경찰청·(사)코바포럼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4. 8, 53쪽, 재구성.

37)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의 숙박비 지원은 2014년 주거지 내 강력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 발생 후 긴급하게 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임시숙소」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형세, 앞의 논문, 53쪽.

38)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동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정되고 지원되는 등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력자이자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형사사법기관을 보조하고 있다. 이처럼 진술조력인 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진술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실제적 진실 규명에 기여하는 전문적인 사람을 말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심리·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중립적 위치에서 상호간 진술의 왜곡됨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다. 2014년 4월 기준, 경찰청은 92명의 진술 분석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25개의 윈스토티지원센터 등 아동·장애인 피해자 진술녹화시에 활용하고 있다. 김학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4. 12-13쪽.

앞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의 기능별 피해자 보호 대책은 「감사관」에서 경찰 전체의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지도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사국」은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업무, 「생활안전국」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수사체제 구축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³⁹⁾

2.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의 예산상 한계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 활동은 감사, 수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외사 등 각 기능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2015년 2월 이전까지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인권조사계에서 피해자 대책 담당 1명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부 담당하는 등 경찰청 내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경찰청 차원의 정책 발굴이나 추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주요 재원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제도가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타 중앙부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어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신설 및 예산 확보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예로 경찰 내 피해자 보호사업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 기금 내 사업인 「임시숙소」의 숙박비 지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14년 2억 2백만원, 2015년 2억 4천만 원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 단계인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39) 이형세, 앞의 논문, 52쪽.

40) 이형세, 앞의 논문, 53쪽.

실제 일선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예산으로 운영되는 임시숙소 숙박비 지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부족과 더불어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현 실정에 맞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고 또한 조속한 집행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경찰청의 공동학술세미나 발표 자료에 의하면,⁴¹⁾ 2015년 기준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총 824억 8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법무부(289억 2천, 35%), 여성가족부(337억 8천, 41%), 보건복지부(195억 4천, 23.7%)에 많은 액수가 배정되어 있는 반면,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장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찰에게는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0.3%(2억4천만 원)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표 2> 2015년 기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총 사업비 824억 8천만원)

부처 기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기 금	289억2천(35%)	337억8천(41%)	195억4천(23.7%)	2억4천(0.3%)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형사조정수당 •강력범죄 현장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피해회복지원 (의료·간병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임시숙소 숙박 비용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등)

※ 이형세,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고찰과 발전방안, 경찰청·(사)코바포럼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4. 8, 54쪽, 재구성.

이러한 결과 정부의 예산 지원 없는 경찰 인력 위주의 피해자 보호활동은 현실적으로 범죄 초기 경찰의 신속한 개입보다는 다른 부처나 단체,

41) 경찰청·(사)코바포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발전 방향,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4. 8, 54쪽 참조.

NGO 등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범죄가 발생한 직후 경찰의 위기 개입이 가장 중요함에도 연계과정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 지원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 동안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기존 수사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은 범죄수사와 가해자 검거에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나, 최근까지 「피해자서포터 전문화 과정」외 별도의 실무 교육이 부족한 부분도 한계로 제기되고 있다.⁴²⁾

제3절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

1.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개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이다.⁴³⁾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기능과 긴밀히 공조하여 소속 관서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

42) 이형세, 앞의 논문, 54쪽.

43) 경찰청은 2015년 2월 12일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 대한 약칭으로 '피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용어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영어발음인 'pigeon(피전)'과 같은 동음이라서 다의적 표현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관리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연계 가능한 경찰관서 관내의 피해자 지원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원활하고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긴급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경찰기관 및 내·외부의 협력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경찰의 피해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교육원 등 내부 교육 및 홍보활동에 힘쓰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범죄피해자의 피해 사실이나 그들의 신상정보 등 관련 비밀은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원칙을 직시하며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는 경찰에서 이제 막 시작되어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가는 과장에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최근까지 인터뷰한 경찰관들에 의하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우리 경찰은 또 다른 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경찰에게서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로 인해서 경찰이 국민과 항상 함께하고 가까이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시민들에게 심어지게 되어 조속히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정착되기 기대한다.

2.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체계 및 역할

「범죄피해자 보호」라 함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보호, 경제적·심리적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가·민간 단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⁴⁴⁾

또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배려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협력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력 강화 및 대국민 신뢰 제고할 수 있는 길이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첫째,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⁴⁵⁾의 지원제도 이다.

이들은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범죄 발생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직면한 심리적 충격완화를 위한 응급처치 실시 및 안정 유도, 심리상담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맞춤 지원활동을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심리평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사건 담당자가 사건 개요, 피해자 조사 예정일·장소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고·통보하여 피해자 심리평가 및 상담을 지원한다.

범죄 피해자들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⁴⁶⁾ 발병률이 자연재해 또는 사고보다 4~6배 높으며 초기단계의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 접근방법, 상담기법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단순 위로와 법률상담 등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심리 전문요원의 활동으로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리평가와 상담을 하는 등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CARE)과 더불어 2015년 2월부터 범죄발생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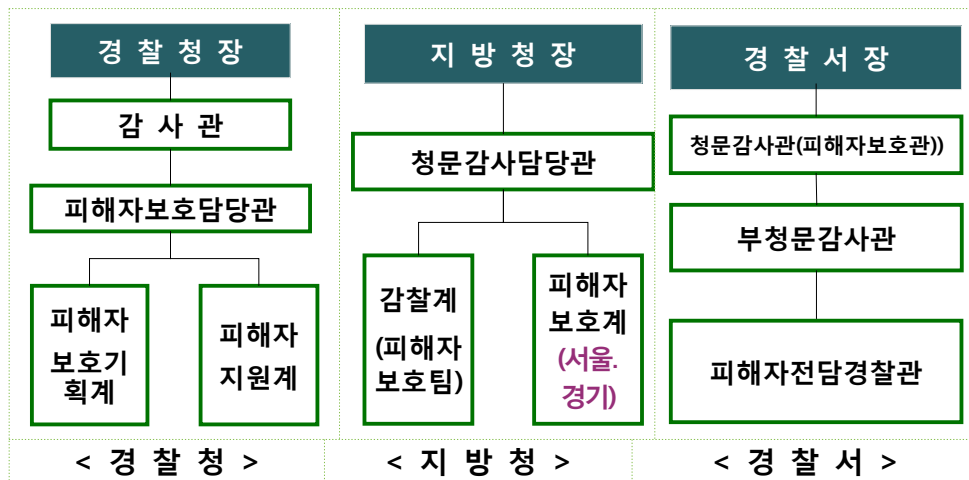
44)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14. 2, 15쪽.

45) 2006년 8월부터 심리학 전공자 등을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경찰관으로 특채하여, 강력범죄의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상담·지원활동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들은 각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다.

46)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심적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공포스런 기억의 재발, 우울증, 만성정신분열증 등의 후유증을 말한다.

기에 신속한 위기 개입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⁴⁷⁾전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구축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배치



※ 출처: 경찰청 내부 자료 참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인력배치는 2015년 2월 기준으로 경찰청 11명, 지방청 55명, 경찰서(1급지) 141명으로 총 207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후, 2015년 8월 기준으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경찰청 11명, 지방경찰청 57명, 경찰서는 이전 141명에서 250명 등 총 318명으로 111명을 증원을 하였다.⁴⁸⁾

47) 피해자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주된 임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이다. 이들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능과 긴밀히 공조하여 소속 관서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 단체와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내·외부의 협력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활동 중 알게 된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 관련 비밀은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8) 이동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제5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특히, 각 지방경찰청 중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피해자 보호계』를 신설하고, 그 외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을 구성하여 2-3명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은 살인 등 중요사건 전담 및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요청 사건에 대해 심리상담 지원하고 있다.

각 경찰서의 경우, 1급지 경찰서는 청문감사관실 내 전담 경찰관(전종요원)을 배치하고, 2·3급지 경찰서는 기존 청문감사관실 내 인권보호업무 담당이 피해자 전담경찰관 업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부청문관이 담당하던 『피해자 대책관』의 업무(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9조)를 청문감사관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4> 피해자 전담경찰관 배치현황(1급지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방청	8	3	3	3	3	3	3	9	2	3	3	2	3	2	3	2
경찰서	31	15	10	8	5	5	4	28	3	3	4	4	3	5	10	3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배치기준은 첫째, 상담심리·사회복지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수사경과자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 경력자, 피해자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능통한 자 우선 고려하였다.

둘째로 피해자 서포터제도로 사건담당자 등을 피해자 서포터로 지정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 조치·지원제도 안내·수사진행 상황 통보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담하고 있다.⁴⁹⁾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보통 사건의 진행에 따라 공감, 지원, 안정 단계별로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5>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

단계별	구체적 역할
사건초기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사건 등 발생시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고, NEEDS를 파악(필요시에는 현장에 동행하거나 출동) 형사절차에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 및 구조제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
사건진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검증·임시숙소 퇴실 관련 필요시에 동행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를 내실화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전문단체·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계 지원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단순 연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동행하거나 신청 절차 대행 지원
사건후기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피해자와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관심과 피해자 지원 결과 확인 등을 통해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생활 복귀 도모 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

보통 평상시에는 형사활동 또는 지역경찰 활동 등 기본업무 수행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인·他경찰관의 무분별한 접

49) 피해자 서포터제도란 경찰관 중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피해자서포터로 선임하여 강력범죄 발생 시에 피해자를 전담하여 신변보호, 초기상담, 지원 제도의 안내, 수사진행 상황의 통보 등 각종 피해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평상시에는 형사활동이나 지역경찰 활동 등의 기본업무에 종사하다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대상사건이 발생할 때 피해자서포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동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제5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10. 2, 227쪽.

근 및 중복된 질문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위해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 서포터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을 지양해야 한다.

최근 2015년 5월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의 전면 개정을 통해 기존의 ‘피해자서포터’를 대신하여 ‘피해자보호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⁵⁰⁾

또한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 안내서 등을 교부하고 상담기관·의료기관·형사절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지 여부 등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더불어 피의자로 인한 보복범죄 가능성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지구대와 협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조치해야 한다.

셋째로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11조의 2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5개항의 피해자 권리를 고지한 후, 권리고지 확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권리 고지 내용은 ①피해자 진술권 ②수사 진행사항 통지 ③상담 지원 ④경제적 지원 ⑤개인정보 보호 이다.

넷째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에 근거하여 범죄 피해자가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의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숙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찰은 경찰관서에서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임시거처 할 숙박업소를 선정 후 범죄 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를 지원해야 한다. 2014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을 최초 확보하여 지원 받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상범죄는 살인·강도·방화 등의

50) 이동희, 위의 논문, 228쪽.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주거침입절도 피해자 등이다. 특별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최대 5일이지만, 사안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 절차는 피해자 신청과 심사권자(주간 : 청문감사관, 야간 : 상황관리관) 승인이 필요하며, 임시숙소로 연계하며 기금이 집행된다.

특히,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러브호텔, 모텔촌 등이 밀집한 지역에는 임시숙소가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전문보호시설에 우선 연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피해자보호규칙(경찰청 훈령) 제13조(신변안전조치)에 근거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사항 및 피해자 등 입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개·암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신변안전 조치의 종류로는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다.

3. 범죄 피해자의 통지 제도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는 범죄피해자 본인 및 고소·고발인 등에게 피해자의 권리 고지 및 수사절차 안내, 각종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친족,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04조는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처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¹⁾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지시기를 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사건초기단계, 진행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범죄 발생사건 초기의 경우에는 형사절차 개요 설명, 사건의 담당수사관 성명 및 연락처,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고지 및 피해

51) 범죄수사규칙(훈령 제774호, '15. 8. 28 개정) 제204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지원기관·제도 등 관련 정보 제공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구조금 지급절차, 법률구조공단 및 인근 피해자지원센터 이용 안내 등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특별히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사건 조사 전에는 민원 내용을 경청해야 하고, 피해자가 충분한 진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 중에는 피해자가 알시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예단적인 평가나 감정적 대응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앞으로의 수사진행 절차나 조사 일정 등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진행 단계로 범죄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탄력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건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혐의유무가 불명확한 사건은 조사일정, 향후 처리과정 등 간략한 내용만 통지해야 하며,⁵²⁾ 강·절도 등의 범죄피해가 명백한 사건은 가급적 상세하게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⁵³⁾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에서는 범죄 사건처리 결과 및 이후 형사 절차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통지 방법으로는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할 수 있는데,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5조는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⁵⁴⁾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

52) 통지 예시로 '○○. ○. ○.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불응하고 있어 소재수사 중에 있습니다. 증거수집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 통지 예시로 CCTV·감식결과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였으며, 현재 탐문수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54) 2006년부터 CIMS를 활용한 사건접수·수사결과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주는 제도로서 CIMS에서 사건을 접수하면서 피해자가 통보방법을 SMS메시지로 선택한 경우에는 사건접수·이송·수배·종결시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고, 수동으로도 중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범죄 피해자와 연락 또는 의사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 및 배려 차원에서 사건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 선택하고, 또한 불가피한 때에는 통지 생략할 수 있다.

제4절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1.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대상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은 필수검토 사건과 요청 사건으로 구분하는데, 전자인 「필수 검토」사건이라 함은 범죄사건 발생 시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을 필수적으로 검토, 상담 및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건이다.

예를 들면, 강력사건인 살인, 강도, 방화 그리고 주요 폭력사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일부 행위를 말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흉기 등 사용 혹은 집단으로 행한 폭행·협박·체포·감금·강요, 상해, 공갈로 인하여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후자인 요청사건이라 함은 경찰의 각 기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의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성폭력·가정폭력 사건 등 전담체계가 마련된 경우라도 추가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나 불안이 크거나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리고 기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의 경우는 요청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여청 전담 사건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성매매 등 여청 전담 사건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여청 기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청에서 지원 요청 전에 피해자를 연계한 기관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 연계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청 소관의 보호대상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여청에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지원연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여청에 대상자 통보 및 지원 권고를 하고 이러한 통보 등에도 불구하고 여청에서 지원연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전담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별건으로 지원하던 도중에 지원대상자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등 피해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전담하여 지원해야 한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유형별 상담 및 출동 현황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 이후, 2015년 2월에서 8월까지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상담건수는 총 17527건으로 집계되었고, 출동건수도 총 3432건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는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중상해,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흥기·집단) 위반, 사망, 교통·중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약자배려, 기타 사회적 이슈 등의 모든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수가 포함된다.

특히, 전체적인 범죄피해자의 상담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흥기·집단에 의한 폭력행위(6214건), 가정폭력(4951건), 성폭력(1815건), 교통사망(623건), 강도(570건), 살인(568건), 방화(547건), 체포감금(260건), 교통 중상해(236건), 약자배려(181건), 중상해(136건), 약취유인(33건)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고, 기타 사회적 이슈들도 1393건이나 상담을 하였다.

출동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983건으로 가장 많이 출동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흥기·집단에 의한 폭력행위(863건), 성폭력과 살인(292건), 교통사망(220건), 강도(161건), 방화(153건), 중상해(68건), 약자배려(56건), 체포감금(46건), 교통 중상해(44건), 약취유인(6건) 순으로 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장 많은 3824건을 상담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서울(2550건), 부산(1736건), 경남(1606건), 충남(1200건), 대구(1179건), 경북(1131건) 순으로 상담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 경찰청의 출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장 많은 출동(1233건)을 하였고, 다음으로 경남(434건), 충남(241건), 대구(194건), 전남(173건), 인천(167건), 서울(166건), 경북(148건), 전북(146건) 순으로 출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범죄피해자 상담 및 출동 건수(2015. 2-8월 기준)

(건)

구 분		합계	살인	강도	방화	체포 감금	중상 해	약취 유인	폭처
총계	상담	17527	568	570	547	260	136	33	6214
	출동	3432	292	161	153	46	68	6	863

구 분		합계	살인	강도	방화	체포 감금	중상 해	약취 유인	폭처
서울	상당	2550	69	113	135	46	30	8	1142
	출동	166	18	14	14	2	5	0	33
부산	상당	1736	35	68	42	11	8	2	530
	출동	77	4	8	3	1	0	0	15
대구	상당	1179	39	62	41	25	6	5	489
	출동	194	15	11	2	6	2	2	56
인천	상당	619	20	22	14	1	4	1	156
	출동	167	12	5	6	0	1	0	31
광주	상당	290	10	17	26	7	14	0	72
	출동	63	2	7	16	2	6	0	7
대전	상당	342	11	25	24	7	2	0	190
	출동	103	8	8	5	2	1	0	59
울산	상당	242	20	8	28	3	1	2	108
	출동	62	15	1	14	1	1	1	14
경기	상당	3824	106	94	64	38	23	5	1049
	출동	1233	89	50	33	21	24	0	354
강원	상당	344	9	12	10	3	8	1	134
	출동	92	10	2	3	0	0	1	32
충북	상당	734	21	24	12	31	4	0	394
	출동	77	10	13	9	2	2	0	9
충남	상당	1200	53	30	54	14	13	1	614
	출동	241	33	14	11	2	10	0	73
전북	상당	539	21	10	7	6	2	2	157
	출동	146	7	3	2	0	1	0	32
전남	상당	870	23	16	18	16	2	3	292
	출동	173	14	4	8	2	1	1	25
경북	상당	1131	53	38	27	18	1	0	379
	출동	148	12	9	8	2	0	0	47
경남	상당	1606	63	21	30	29	15	3	410
	출동	434	35	8	13	1	12	1	67

구 분		합계	살인	강도	방화	체포 감금	중상 해	약취 유인	폭처
제주	상당	322	15	10	15	5	3	0	98
	출동	56	8	4	6	2	2	0	9

구 분		교통 사망	교통 중상해	소계	성폭	가폭	약자 배려	기타 (사회이 슈 등)
총계	상당	623	236	8340	1815	4951	181	1393
	출동	220	44	1579	292	983	56	248
서울	상당	29	25	953	247	455	29	222
	출동	5	4	71	17	44	2	8
부산	상당	32	35	973	203	591	21	158
	출동	2	1	43	11	21	6	5
대구	상당	36	7	469	69	119	8	273
	출동	17	2	81	16	25	2	38
인천	상당	7	9	385	25	294	12	54
	출동	3	0	109	2	35	3	69
광주	상당	32	23	89	19	40	1	29
	출동	6	3	14	2	10	0	2
대전	상당	13	0	70	18	22	2	28
	출동	0	0	20	6	5	1	8
울산	상당	7	4	61	3	24	0	33
	출동	1	0	14	0	12	0	2
경기	상당	33	20	2392	611	1740	13	28
	출동	14	15	633	127	479	6	21
강원	상당	35	6	126	23	88	4	11
	출동	17	0	27	5	20	2	0
충북	상당	42	9	197	58	98	3	38
	출동	8	0	24	10	8	0	6
충남	상당	77	24	320	161	53	3	103
	출동	38	5	55	22	17	3	13
전북	상당	69	24	241	54	152	9	26
	출동	30	1	70	15	41	7	7

구 분		교통 사망	교통 중상해	소계	성폭	가폭	약자 배려	기타 (사회이슈 등)
전남	상담	100	14	386	46	290	11	39
	출동	27	7	84	14	48	7	15
경북	상담	70	10	535	99	248	38	150
	출동	30	2	38	4	25	2	7
경남	상담	27	26	982	179	723	24	56
	출동	20	4	273	41	188	12	32
제주	상담	14	0	162	0	14	3	145
	출동	2	0	23	0	5	3	15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재수정).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현황

경찰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17,527건의 범죄 피해 상담을 실시하고, 그중 16,835건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연계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2015년 4월 신변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 이후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 신변경호, 순찰강화, 안전숙소제공 등 345건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특히 112긴급신변보호시스템을⁵⁵⁾ 구축하여 신변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⁵⁶⁾

55) 112긴급신변보호시스템이란 신변보호 요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변보호 요청 사유 등을 사전에 112상황실 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상자가 112신고시 현장경찰관이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도록 조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56)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시책, 2015. 7. 21 보도자료 참조.

〈표 7〉 경제적·심리적·법률적 건수(2015. 2-8월 기준)

유형	계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기타
구분	16,835	2,842	9,031	3,317	1,645
서울	1957	438	774	198	547
부산	2094	201	1239	627	27
대구	1391	186	554	634	17
인천	915	126	512	269	8
광주	204	65	95	13	31
대전	326	33	225	44	24
울산	224	68	94	35	27
경기	3814	754	2250	641	169
강원	318	96	140	22	60
충북	457	80	172	52	153
충남	439	107	228	63	41
전북	527	94	327	64	42
전남	639	129	423	20	67
경북	1525	185	753	332	255
경남	1767	259	1217	175	116
제주	238	21	28	128	61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에 있어 경찰은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의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거나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⁵⁷⁾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지원이나 일시적 보호시설의 운영

5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를 임시숙소 제공의 근거법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행한 실무운용 매뉴얼에 의하면,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와 성폭력, 가정폭력, 주거침입절도 피해자 등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원기간은 1~2일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 5일이지만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경찰서의 심사권자—주간 청문감사관, 야간 상황관리관—가 필요성—거주지 노출 등으로 보복 피해 우려가 있거나 방해 피해 등으로 거주할 곳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면 임시숙소에 연계하고 기금을 집행하게 된다.⁵⁸⁾

임시숙소는 당해 경찰관서에서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고, 최근 2015년 5월부터 숙박업소 재정비를 단행하여 기존의 모텔·여관 위주였던 것을 레지던스, 호텔, 콘도, 펜션, 종교시설, 수련원 등으로 다변화하였다.⁵⁹⁾

임시숙소는 2015년 9월 현재 310개소에 이르며,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전국적으로 건수로 2,347건, 숙박일수로 4,012일, 집행금액으로 203,930,000원의 이용현황을 보였다. 임시숙소 소요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바, 2015년도 경찰 배정금액 2억400만원은 소진된 상태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014년도에 최초로 경찰 예산을 확보하여 임시숙소 제공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 9면 참조.

59) 재정비 이전에는 모텔·여관이 428개소로 전체(534개소)의 80%를 차지했으나 정비 후에는 전체 임시숙소를 310개로 축소하는 동시에 모텔·여관의 개소와 비율을 낮추고(79개, 25%), 호텔(71개→124개 40%), 콘도(27개→52개 17%) 등의 비율을 늘였다. 임시숙소 관련 수치는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업무보고 참고자료’(2015년 9월)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3장 일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제1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1.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배경

일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계기가 된 것은 1974년 8월에 발생한 미즈비시 중공업(三菱重工業) 빌딩폭파 사건이다. 1980년(昭和55年)에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이 제정되어, 살인이나 상해 등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급부제도(犯罪被害給付制度)」가 발족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원조가 시작되었다.⁶⁰⁾

그리고 1991년 개최된 「범죄피해급부제도 발족 10주년 기념 심포지엄(犯罪被害給付制度発足1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에서⁶¹⁾ 범죄피해자에

60)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3面.

61) 犯罪被害給付制度発足1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平成3年)における 交通事故の遺族の方の 発言要約) 私の息子は、去年の10月12日、飲酒運転者に殺されました。殺された後数カ月間、私はどうやって生きていけばいいのか分からず、本当に無我夢中で、日本には何か私を精神的に助けてくれるところがないのかと必死になって探しましたけれども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先程パネリストの先生からも、「日本では、被害者の声として出てこない、被害者の本当にそれがニーズなのか」という発言もありました。でも被害者の立場になりますと、はい、私が被害に遭いましたと大きな声で言って、大きな声で泣ける、そういう社会ではありません。今の日本は大きな声で泣きたくても泣けないんです。ただじっと自分で我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今の日本における被害者の姿だと思います。日本では、そういう被害者を精神的に救う道が何もありません。まずそれを創ってほしいと思うことなんです。先ほど、「被害者が立ち直るためには同じ被害者同士での話し合いが一番大切だ」という発言がありましたが、それを支援してくれる専門家の方たちの助言がないとうまく立ち直っていきません。子ども

대한 정신적 지원의 필요성이 범죄피해자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한층 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2. 일본의 범죄피해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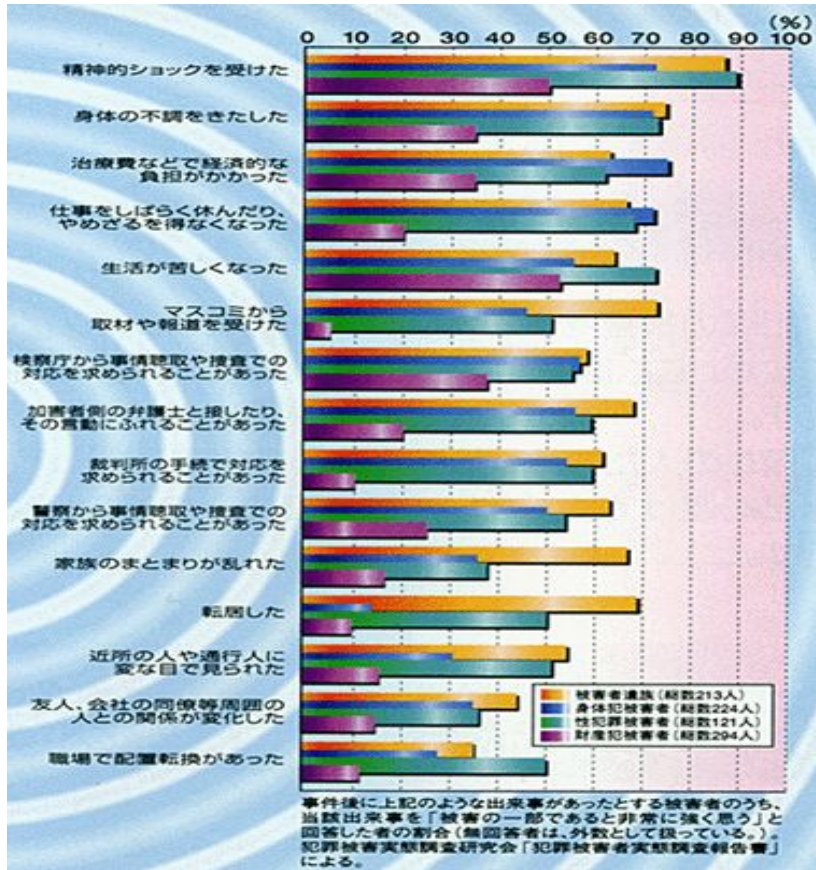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자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생명을 빼앗거나 그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상처를 입거나, 물건을 도둑맞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을 당한 것에 의한 정신적 쇼크나 신체의 부조, 의료비의 부담이나 실직, 전직 등에 의한 경제적 곤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그리고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의 무책임한 이야기나 매스컴의 취재, 보도에 의한 스트레스, 불쾌감 등 범죄 피해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보통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을 2차적 피해라고 한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2차적인 범죄 피해로는 정신적 쇼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신체의 부조, 의료비의 부담 순으로 2차 피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を殺された親は、このようなつらい思いをもう他の人たちにさせ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でいっぱいなのです。どんな協力も惜しみませんから、1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が開かれたこの機会に、是非、一歩でもいいんです。一歩だけでも踏み出して下さい。お願いします。

<그림 4> 일본의 2차적 피해 상황



※ 출처: 2015년 日本 警察庁(<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참조.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2차적 피해중에서도 정신적 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 사린(Sarin)⁶²⁾ 사

62) 사린(Sarin)은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합물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킨다. 사린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수 분내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호흡기, 눈,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콧물, 눈물, 침,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곤란, 시력저하, 메스꺼움, 구토, 근육경련,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 발현이 빠르고, 기도폐쇄, 호흡근육마비 등이 발생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한 기체이다. 처음엔 시력저하부터 시작 된다. 시신경을 마비시키며 계속되면 사망에 이른다. 시안화물 보다 5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1995년에 일본 도쿄에서 옴진리교가 테러에 사용했

건(東京地下鉄サリン事件)」⁶³⁾과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はんしん・あわじだいしんさい, 阪神・淡路大地震)⁶⁴⁾의 피해자가 각종 트라우마(trauma)⁶⁵⁾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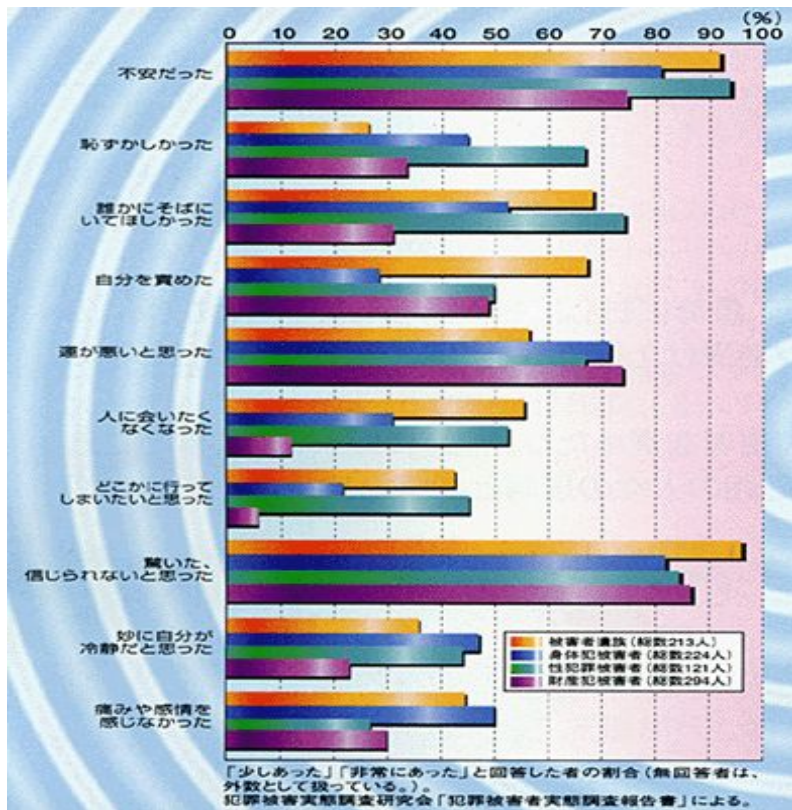
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A6%B0>(2015. 10. 6. 검색).

- 63)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東京地下鉄サリン事件)(통칭 지하철 사린 사건(地下鉄サリン事件)은 일본의 종교 단체인 옴진리교가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지하철에서 테러를 일으킨 사건으로 지하철 차내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신경가스 사린이 살포되어 승객과 역무원 등 12명이 사망, 5,5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본에서는 당시 전후 최대급의 무차별 살인 행위인 것뿐만 아니라, 마쓰모토 사린 사건에 이은 대도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학병기가 사용된 역사상 최초의 테러 사건으로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일본의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심각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3월 22일 일본의 경시청은 신흥 종교단체 옴진리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실시, 사건에의 관여가 판명되어 체포된 교단의 간부급 신자 하야시 이쿠오의 자백에 의해 전모가 밝혀졌다. 도쿄 지방법원은 주범인 교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지즈오)를 시작으로 하야시 이쿠오를 제외한 범인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등재판소에서는 무기징역 판결도 다수 나왔다. 2012년 기준, 이 사건에 관여한 다카하시 가쓰야(高橋克也)·기쿠치 나오키(菊地直子)등 두 명의 용의자 중 기쿠치는 6월 3일에 가나가와 현 사가미하라 시서 체포되었고, 다카하시가 6월 15일 도쿄의 한 만화카페에서 붙잡히면서 모든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BF%84_%EC%A7%80%ED%95%98%EC%B2%A0_%EC%82%AC%EB%A6%B0_%EC%82%AC%EA%B1%B4(2015. 10. 6. 검색).
- 64) 1995년 1월 17일 간사이(關西) 지방 효고현(兵庫縣) 남부의 고베시를 비롯하여 니시노미야시(西宮市)·아시야시(芦屋市)·다카라즈카시(宝塚市) 등 한신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지진이다. 원인은 효고현 아시야시 부근에서 아와지섬(淡路島)까지 약 50km에 걸쳐 있는 얇은 활성단층인 야지마단층이 활동하여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는 이 지진이 남북으로 초당 최고 89.3cm, 동서로 74.4cm, 상하로 39.6cm의 진동폭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규모 7.2로 일본의 지진관측 사상 최대의 파괴력을 지닌 지진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베시 반경 100km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까지 확대되었다. 고베시의 피해가 가장 커서 흔히 고베대지진이라고도 부른다. 피해상황은 사망자 6300여 명, 부상자 2만 6804명, 이재민은 약 20만 명에 이르고, 물질 피해 규모는 14조 1000억엔(미화 약 1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써 조선·철강산업의 중심지인 고베시의 수많은 건물과 공장시설 및 고속도로·철도·통신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어 이 지역의 산업 활동을 마비시켰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고통을 주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622&cid=40942&categoryId=31787>(2015. 10. 6. 검색).
- 65)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 기억되는데,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291&cid=43667&categoryId=43667>(2015. 10. 6. 검색).

stress disorder)⁶⁶⁾ 증상을 호소한 것에 의해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특히, 최근의 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들의 정신상태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감과 공포감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일본에서 범죄 피해 직후의 정신상태



※ 출처: 2015년 日本 警察庁(<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참조.

6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신체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으로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6927&mobile&cid=51007&categoryId=51007>(2015. 10. 6. 검색).

또한 2008년 10월 내각부가 행한 「범죄피해자등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사건 후의 심경이나 상황에 관해서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6할 이상이 「불안을 가졌다」고 답하는 등 많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⁶⁷⁾

이처럼 범죄피해로 인해 심신에 영향을 주어 쇼크상태가 지속되어 마음이나 신체에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심신의 변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동일인이라도 시간의 경과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심리적인 영향으로는 감각·감정의 마비, 기억력·판단력의 저하, 자기평가의 저하,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공포감, 불안감, 자책감, 무력감, 절망감, 고독감, 소외감, 굴욕감, 분노, 슬픔 등을 품거나, 현실이라고 하는 감각이 없기도 하다.

신체적인 영향으로는 현기증, 과호흡, 심계항진, 설사, 변비, 불면, 악몽, 구토, 식욕부진 등으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⁶⁸⁾

3.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일본의 경찰은 범죄 피해의 신고, 피의자의 검거, 피해의 회복·경감, 범죄의 재발방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인 점에서 범죄피해자의 시점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1996년 2월(平成 8년 2월)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

67)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1面.

68)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2面.

진함에 있어 기본 방침을 정리한 「피해자대책 요강(被害者対策要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에는 장관 관방 급여후생과(長官官房給与厚生課)에 범죄피해자대책실(犯罪被害者対策室)을 설치하여 각종 시책의 기획·조사 외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있다.⁶⁹⁾

1999년 6월(平成11年6月)에는 경찰관이 수사활동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방법, 절차 등을 정리한 범죄수사규범(犯罪捜査規範)을 개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 정보제공, 범죄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⁷⁰⁾

2001년 4월(平成13年4月)에는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犯罪被害者給付金支給法)」이 개정되어 경찰본부장 등이 행하는 범죄피해 등의 조기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조언 및 지도, 경찰관의 파견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공안위원회에서는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꾀하기 위해 「경찰본부장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에 대한 원조의 실시에 관한 지침, 2002년 국가공안위원회 고시 제5호(警察本部長等による犯罪の被害者等に対する援助の実施に関する指針, 平成14年国家公安委員会告示第5号)」를 정해 2002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⁷¹⁾

2004년 12월(平成16年12月)에는 「범죄피해자등기본법(犯罪被害者等基本法)」이 제정되어 2005년 4월(平成17年4月)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에서는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해두고, 국가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의 대강 등을 정하는 범죄피해자등 기본계획을 책정할 것, 지방공공단체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책을 실시할 것 등이 포함 되었다.

69) 이 범죄피해자 대책실(犯罪被害者対策室)은 이후 2008년 7월(平成 20年7月)「犯罪被害者支援室」로 개칭되었다.

70)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6 검색).

71)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7 검색).

일본 정부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平成17年12月)에 「범죄피해자등 기본계획(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을 각의 결정하였다. 그 계획중에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내각부「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실(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室)」을 중심으로 경찰청(警察庁)을 포함한 관계성청(關係省庁)이나 유식자(有識者)등에 의해 구성된 3개의 검토회⁷²⁾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2007년 11월(平成19年11月)에 「최종정리」가 결정되었다.⁷³⁾

이 「최종정리」등을 근거로 2008년 4월(平成20年 4月)에는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관련된 정부법령도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 급부제도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홍보 및 개발 활동의 추진 등이 포함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더불어 국가 공안 위원회에서는 경찰본부장 등이 행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원조 및 민간범죄피해자 등 지원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지침, 2008년 국가공안위원회 고시 제25호(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指針, (平成20年国家公安委員会告示第25号)」를 정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⁷⁴⁾

2011년 3월(平成23年 3月)에는 「범죄피해자등기본법(犯罪被害者等基本法)」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을 2015년도 말까지의 5개년으로 하는 「제2차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第2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이 결정되어, 정신적·경제적 지원의 충실을 꾀하는 대처 등이 포함되었다. 일본 경찰청에서는 이 계획의 결정을 통해 「피해자대책요강(被害者対策要綱)」을 다시

72) 이 3개의 검토회는 「경제적지원에 관한 검토회(経済的支援に関する検討会)」, 「지원을 위한 연계에 관한 검토회(支援のための連携に関する検討会)」, 「민간단체에의 원조에 관한 검토회(民間団体への援助に関する検討会)」이다.

73)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4面.

74)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7 검색).

돌아보고, 경찰에 있어서 특히 강구해야 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지원요강(犯罪被害者支援要綱)」을 제정하였다.⁷⁵⁾

<표 8>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 연혁

연도	내용
1974. 8	미쯔비시중공업 빌딩폭파사건(三菱重工ビル爆破事件)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범죄피해급부제도의 필요성이 논의
1980. 5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 공포(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公布)
1981. 5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 시행(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施行) (재단법인)범죄피해구원기금 설립(財団法人犯罪被害救援基金設立)
1985. 8	범죄방지 및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제7회 국제연합회의「犯罪防止及び犯罪者の処遇に関する第7回国際連合会議」 동 회의에 있어서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채택」
1990. 11	일본 피해자학회 설립(日本被害者学会設立)
1991. 10	범죄피해급부제도 발족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犯罪被害給付制度発足1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開催) 본 심포지엄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원조의 필요성이 제기 됨
1992. 3	동경에 「범죄피해자 상담실 설립(犯罪被害者相談室; 東京) 設立」 ⁷⁶⁾
1995. 3	지하철 사린 사건(地下鉄サリン事件),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바든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됨.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에 의해 경찰의 피해자 대책이 정립되고 관련 기본 방침이 책정 됨.
1996. 2	일본 경찰청은 「피해자대책요강(被害者対策要綱)」을 만들어 전국 경찰에 통보, 경찰청장관 관방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대책실(警察庁長官官房給与厚生課に犯罪被害者対策室) 설치
1998. 5	전국 피해자지원 네트워크(全国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 설립
1999. 5	전국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에 의한 「범죄피해자 권리선언(犯罪被害者の権利宣言)」발표,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75)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7 검색).

연도	내용
	<p>보호등에 관한 법률 공포(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公布)</p> <p>경찰청 범죄수사규범(犯罪捜査規範)의 일부 개정 규칙 공포·시행(1999. 6)</p>
1999. 11	일본 정부에 「범죄피해자대책 관계성청 연락회의(犯罪被害者対策関係省庁連絡会議)」 설치
2000. 5	<p>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 개정 및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사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공포 「刑事訴訟法及び檢察審査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p> <p>아동학대방지법(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公布(11. 20 시행))</p> <p>스토커행위등의규제에 관한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공포</p> <p>소년법 일부 개정(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公布), 기록열람·등사권 확대, 피해자의 의견 청취, 결정 통지 등</p>
2001. 4	<p>「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개정</p> <p>「배우자로부터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공포</p>
2001. 11	범죄피해급부제도 발족·범죄피해구원기금설립 20주년 기념 범죄피해자포럼 개최(犯罪被害給付制度発足・犯罪被害救援基金設立20周年記念 犯罪被害者支援フォーラム開催)
2002. 1	「경찰본부장 등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원조의 실시에 관한 지침(警察本部長等による犯罪の被害者等に対する援助の実施に関する指針(4月1日 施行)」공포
2004. 12	「범죄피해자기본법(犯罪被害者等基本法(2005. 4. 1시행)」공포
2005. 12	「범죄피해자등 기본계획 각의 결정(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が閣議決定)」
2006. 4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犯罪被害給付制度改正 (重傷病給付金支給要件緩和等)」
2007. 6	「범죄피해자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公布)」
2008. 4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公布(7. 1施行)」
2008. 7	경찰청 관방급여후생과 범죄피해자 대책실을「범죄피해자지원실」로 개칭(警察庁長官官房給与厚生課犯罪被害者対策室を犯罪被害者支援室)
2008. 10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

연도	내용
2009. 9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公布(10. 1施行)」
2011.3	「제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각의 결정(第2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 閣議決定)」
2011. 7	「경찰청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 요강(警察庁において「犯罪被害者支援要綱」を制定 全国警察に通達)」제정 후, 전국 경찰서 배포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公布(7. 15施行)」
2013. 6	「범죄피해자등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및 종합법률지원법(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及び総合法律支援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公布(12. 1施行)」일부 개정
2013. 7	「배우자로부터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公布(2014. 1. 3 施行)」일부 개정
2014. 10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公布, 11. 1施行)」

* 출처 : 日本 警察庁(<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8 검색).

76) 이때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회에 의한 조사(1995년 3월 보고서 제출)가 실시 되었고,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지적을 받은 범죄피해자구원기금의 위탁연구로써 일본 게이오 대학 미야자와 코이치가 회장인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연구회」에 의해 실시된 일본의 본격적인 피해자 실태 연구되었고, 이 연구에 의해 경찰의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2차적 피해의 문제와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5面.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일본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로서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로 입은 피해를 회복·경감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이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특히, 도도부현 경찰서에서는 형사절차의 개요, 수사협력의 부탁,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각종 상담기관·창구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한 팸플릿 「피해자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피해자 안내서는 원칙적으로 살인이나 상해, 성범죄 등의 신체범죄 피해자, 뺑소니 사건이나 교통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사건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6> 일본의 범죄피해자 안내서



* 출처 : 日本 警察庁(<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8 검색).

피해자 안내서의 내용으로는 ㉠ 형사절차의 개요와 수사협력의 부탁 ㉡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요원제도(支援要員制度) ㉢ 형사절차, 수사상황 정보에 관한 제도 ㉣ 재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제도 ㉤ 안전확보에 관한 제도 ㉥ 경제적 지원과 각종 지원·복지제도 ㉦ 정신적 피해자의 지원 ㉧ 각종 상담기관·창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배포하는 안내서에는 ①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의 자동차보험제도 ②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사업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영어로 된 외국어판 범죄피해 안내서도 일본의 각 도도부현 경찰의 실정에 맞게 작성되어 배포하고 있다.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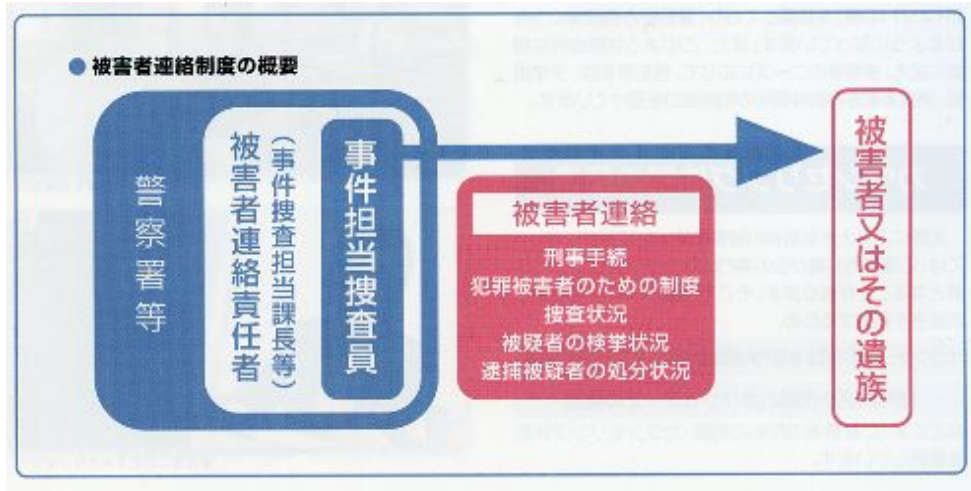
2. 일본의 범죄피해자 연락 제도

일본에서 수사 상황이나 가해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가 등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는 대단히 관심이 높다. 특히, 살인이나 상해, 성범죄 등의 신체범의 피해자, 뺑소니사건이나 교통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에 의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사건 수사의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일본의 경찰은 원칙적으로 신체범이나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피의자의 검거 및 수사상황, 체포된 피의자의 처분 상황 등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피해자연락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검찰청에서도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등에 대해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해자등 통지제도를 두고 있다.⁷⁸⁾

77)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6面.

<그림 7> 일본의 피해자연락제도의 개요



* 출처 : 日本 警察庁(<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8 검색).

범죄피해자의 연락 대상은 ①살인, 상해, 성범죄 등의 신체범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 ② 뺑소니사건이나 교통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락 대상이다.

그리고 피해자 연락의 주된 내용은 ①형사절차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②피의자 검거까지의 수사상황 ③ 피의자의 검거 상황⁷⁹⁾ ④체포피의자의 처분 상황⁸⁰⁾ 등이다. 또한 범죄 사건의 내용을 기억해 내고 싶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정보제공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연락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⁸¹⁾

78)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7面.

79) 피의자의 검거 상황은 피의자를 검거한 것과 피의자의 성명, 연령 등을 연락하며,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을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80) 체포 피의자의 처분 상황은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청의 처분 결과(기소·불기소 등) 공소를 제기한 재판소 등을 연락한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만을 연락한다.

81)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7面.

3.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방문과 익명전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일본의 파출소 등의 지역경찰관은 그 담당구역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요망에 근거하여 방문·연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경찰관에 의한 방문·연락 활동의 주요 내용은 ① 피해의 회복, 범죄피해 확대방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방범상의 지도 연락 ③ 경찰에 대한 요망 등의 청취 ④ 피해자로부터의 상담에 대한 대응 등을 경찰관이 주된 활동 내용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 주변의 순찰이나 여성 경찰관의 방문·연락 활동을 하고 있다.⁸²⁾

또한 경찰은 2007년 10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본인으로부터 범죄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쉬운 범죄를 조기에 인지하여 범인 검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본 경찰청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가 일정의 범죄 등에 관계된 통보를 익명으로 접수하여 유효한 통보를 행한 자에게는 정보료를 지불하는 「익명통보 다이얼」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폭력단이 관여하는 범죄, 범죄 인프라사범, 약물·권총사범, 소년 복지범죄, 아동학대범죄, 인신매매사범 등을 통보대상 사안으로 하여 범인의 검거와 피해자의 조기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⁸³⁾

82)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8 검색).

83)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8面.

4. 경찰관에 의한 상담과 카운슬링 체제의 정비

일본은 각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경찰의 경우에는 주민으로부터 각종 요구나 요청 및 상담을 요구하는 창구로서 경찰본부에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다. 전화에 의한 상담에 관해서도 전국통일번호의 상담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있고, 경찰종합상담실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인 상담과 더불어 범죄피해자의 필요에 의해서 성범죄상담, 소년상담, 소비자피해 상담 등 개별 상담창구를 두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들에게 범죄로부터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카운슬링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경찰은 카운슬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고, 또한 전문적인 정신과의사나 임상병리사 등과 카운슬러와의 연계 등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카운슬링 체재를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⁸⁴⁾

<그림 8> 일본의 범죄 피해자 상담



출처: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10 검색).

84)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8面.

제3절 일본의 범죄피해급부제도(犯罪被害給付制度)

1. 범죄피해급부제도(犯罪被害給付制度)의 개요

일본의 범죄피해급부제도라 함은 ‘묻지마 살인’ 등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망한 범죄해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입거나 또는 신체에 장애가 남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의 연대공조의 정신에 기반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등에 급부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범죄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범죄피해자급부제도는 묻지마 살인 사건피해자의 유족, 범죄피해자학의 연구자, 변호사회 등으로부터 공적인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확립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더욱이 1974년 8월 30일 발생한 미쯔비시중공업 빌딩폭파사건(三菱重工ビル爆破事件; 사망8명, 부상 380명)을 계기로 하여 국회, 매스컴 등에서 크게 논의되면서 범죄피해급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1980년 5월 1일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95년에 발생한 지하철 사린사건((地下鉄サリン事件)) 등의 무차별살상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가 처해진 비참한 상황이 널리 국민에게 인식되어, 범죄피해급부제도의 확충을 시작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사회적인 기운이 급속히 높아진 점 등을 기반으로 중상해 급부금의 창설 등 지급 대상의 확대와 급부 기초액의 인상을 중심으로 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2001년 7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4년 12월에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이익의 보호가 명기된 범죄피해자등 기본법이 성립되어, 2005년 12월 동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등

기본계획이 각의 결정되었다. 이 계획을 받아 중상해급부금에 관해 지급 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기간의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개정이 이루어짐과 함께, 친족간에 행해진 범죄에 관해 지급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정이 이루어져 각각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외 기본계획에 근거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검토회」의 「최종정리」를 근거로 휴업손해를 고려한 중상해급부금의 금액가산, 중도 후유장애자(장애등급 제1급에서 제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가 남은 분)에 대한 장해급부금의 인상, 생계유지관계가 있는 유족급부금의 인상 등 범죄피해 급부제도의 근본적 확충을 꾀하기 위해, 법률, 정령 등 개정이 이루어져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더욱이 폭력단 배제의 노력과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사안의 피해자가 처해져 있는 실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양 등을 기반으로 범죄피해자가 폭력조직에 속해 있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또한 배우자의 폭력 사안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장애등급 중 외모추태의 등급을 재검토하는 규칙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⁸⁵⁾

그리고 2011년 3월 내각에서 결정된 제2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 계획에 근거한 “범죄피해자급부제도의 확충 및 새로운 보상제도의 창설에 관한 검토회”의 최종의견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또는 제1순위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 형제자매의 관계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부지급 사유 및 아동학대등으로 인정되는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의 특례규정을 재검토하는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⁸⁶⁾

85)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12 검색);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8面.

2. 범죄피해금부의 대상 범죄

일본의 범죄피해금부제도의 지급 대상 범죄피해는 일본 국내 또는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 선박 혹은 일본 항공기내에 있어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과실범은 제외)에 의한 사망, 중상해 또는 장애이고,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 심신상실자 또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가해자가 벌해지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⁸⁷⁾

<표 9> 일본의 범죄피해금부제도의 신청피해자 수 및 신청건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신청한 피해자 수(명)	465	491	448	462	589	585	652	619	558	4869
신청건수(건)	608	649	574	565	719	718	810	729	645	6017

区分 / 年度別	21年度以前	22年度	23年度	24年度	25年度	累計	
申請に係る被害者数 (申請者数)	7,558 (10,853)	585 (718)	652 (810)	619 (729)	558 (645)	9,972 (13,755)	
裁定に係る 被害者数 (裁定件数)	支給裁定に係る 被害者数 (裁定件数)	6,716 (9,914)	534 (641)	663 (835)	517 (621)	516 (597)	8,946 (12,068)
	不支給裁定に係る 被害者数 (裁定件数)	400 (522)	29 (32)	52 (61)	56 (69)	55 (65)	592 (749)
	【合計】 被害者数 (裁定件数)	7,116 (10,436)	563 (673)	715 (896)	573 (690)	571 (662)	9,538 (13,357)
裁定金額 (百万円)	21,322	1,311	2,065	1,509	1,233	27,439	

출처: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9面, 일부 수정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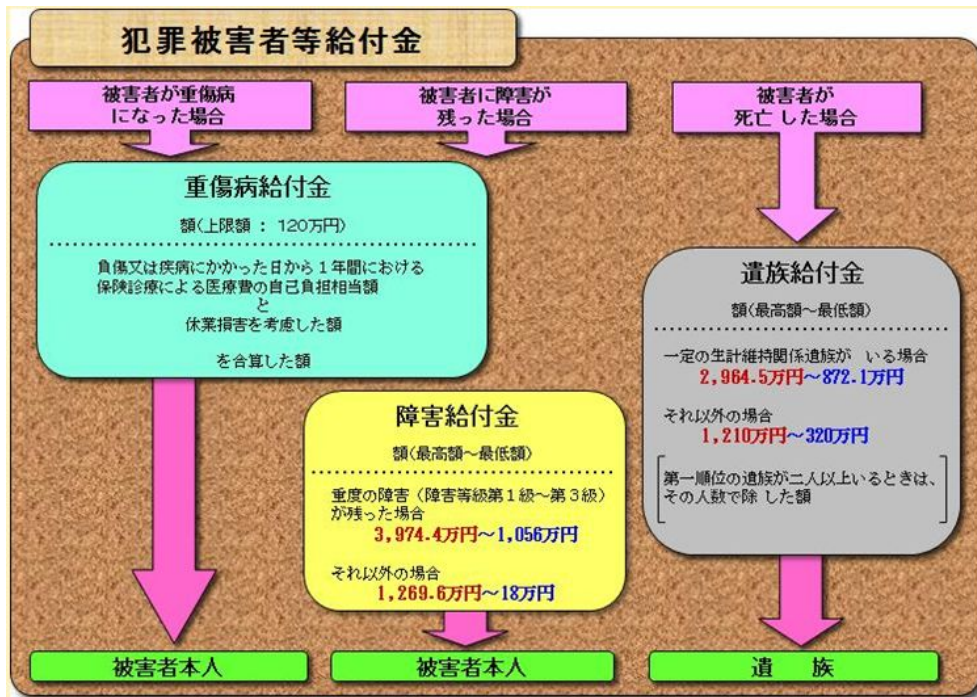
86)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12 검색)

87)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9面.

3. 범죄피해금부금의 종류와 액수, 신청 제한

범죄피해자 급부금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유족급부금」과 범죄행위에 따른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장애에 대해 지급되는「중상해급부금」, 신체에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장애급부금」의 3종류가 있고,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급부금과 장애급부금의 액수는 범죄피해자의 연령과 근로에 의한 수입액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그림 9> 일본의 범죄피해자급부금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2015. 10. 12 검색)

중상해 급부금은 보험진료에 의한 자기부담 상당액과 휴업손해를 고려한 금액의 합산액이 지급되지만, 요양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입원기간

이 3일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범죄피해에 기인한 PTSD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 증상의 정도가 3일 이상 노무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없어도 대상이 된다. 급부금의 지급 대상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고 있다.

또한 유족급부금에 관해서도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 범죄피해자가 사망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발생부터 1년간 보험진료에 의한 의료비의 자기부담 상당액과 휴업손해를 고려한 금액의 합산액이 가산되어 지급된다.

또한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친족간에 행해진 범죄, 범죄피해의 원인이 범죄피해자에게도 있는 경우, 근로재해보험 등의 공적급부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도도부현(都道府縣) 공안위원회의 재정에 의해 급부금의 전부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⁸⁸⁾

급부금 신청은 신청자가 살고 있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본부 또는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 신청은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중상해 또는 장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또는 당해 사망, 중상해 또는 장해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을 경과한 때는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당해 범죄행위의 가해자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당하고 있었던 등의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이 기간내에 신청 할 수 없었던 때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다.⁸⁹⁾

88)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8-9面.

89)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12面.

제4절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부담의 경감

1.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말이나 행동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범죄피해자가 수사에 의해 불필요한 부담을 갖지 않고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범죄피해자를 대할 때, 가능한 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범죄피해의 수리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기분을 배려한 방법에 의해 사정청취가 행해지고, 피해신고의 수리에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각종 상담을 받는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신 분의 유족에 대한 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해부 후,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반송하고,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의 자택으로 급행하는 경우에도 성범죄피해자 등 순찰차가 자택에 오는 것을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사복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소년피해에 관계된 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가능한 한 사건을 타인에게 알려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의 경우는 범죄피해자가 주위의 호기어린 시선에 띄지 않도록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배려가 행해지고 있다.⁹⁰⁾

90)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14面.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설 등 정비 개선

범죄피해자의 사정청취에 있어서 경찰에서는 그 심정을 충분히 배려하여 응접세트를 준비하거나, 조명이나 내부를 개선한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등의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경찰서나 파출소 등의 경찰관서에 출입하는 자체에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등을 배려하여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피해자용 상담실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용 차량」 도입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의 상담과 신고의 수리, 사정청취 등에 활용하고 있다.⁹¹⁾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기 쉽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독신여성 등의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범죄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파출소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여성경찰관의 내방, 전화 등에 의한 여성으로부터의 상담이나 피해의 신고에 대응하는 외에 상담자의 요망에 응하여 순찰, 가정방문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도경찰대에서는 여성경찰관의 배치, 파출소에 배치된 여성경찰관과의 연계 등을 실시하고, 열차내에서의 치안행위나 성범죄에 관한 여성으로부터의 상담, 피해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과 전화 등에 의한 여성경찰관의 상담, 신고접수, 피해실태와 발생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범죄피해자와 동행하여 통근 전차에 승차하는 등의 신변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⁹²⁾

91)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15面.

92)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19面.

3.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한 지정피해지원요원 제도

대부분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범죄사건 발생 직후부터 시작되고 요구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수사관과는 별도로 지정된 경찰직원이 각종 피해자지원활동을 추진하는 「지정피해자지원요원제도(指定被害者支援要員制度)」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에서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 「지정피해자지원요원제도(指定被害者支援要員制度)」의 대상사건으로는 살인, 상해, 강간 등의 신체범(身體犯), 뺑소니 사건과 교통사망 사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다.

지정피해자 지원요원들의 임무는 ① 범죄피해자와 동석하는 것으로 범죄사건 발생 직후 조기에 출동하여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을 수배하고, 피해자와 동석을 하고, 피해자를 자택으로 잘 귀가시키는 것이다. ② 범죄 피해자의 얘기를 청취하는 것으로 우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 그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상담하고 접수한다. 또한 사정 청취(事情聴取)나 피해자조서의 작성을 보조한다. ③ 범죄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단계로 「피해자의 안내서」를 교부, 형사절차 등을 설명하고, 그 외에 가족이나 회사, 학교 등에 대한 설명과 연락을 취한다. ④ 정기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민간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 외부 카운슬러 등의 소개 등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이다.⁹³⁾

특히, 범죄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위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폭력단의 범죄피해자 중에는 소위 「보복」등을 두려워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고, 단념하는 사례들이 있다.

93)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12 검색).

범죄피해자가 경찰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재차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에게 요구된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고 동시에 만일에 있을 불상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자택이나 피해자의 근무처에서 신변보호 활동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긴급통보장치의 대여 등 다양하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⁹⁴⁾

제5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1.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全國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

일본의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는 8개의 현에 설치된 민간피해자지원 단체에 의해 1998년 5월 설립되었다. 그 후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가맹단체는 매년 증가하여 2009년 7월에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모두에 설치된 민간피해자 지원단체가 가맹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는 2006년 5월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인정을 받았다.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에서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 포럼의 개최 등 정보교환에 관한 사업, 전국연수회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홍보·계발에 관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

94) 일본 경찰은 재피해방지요강(再被害防止要綱)을 제정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자, 그 친족 및 관계자가 같은 가해자로부터 재차 위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요강에서는 지속적인 재피해방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재피해방지대상자」로 지정한 것, 경계조치, 정보수집, 자주경계지도 등을 행할 것, 법률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16面.

히, 홍보·계발에 관한 사업으로써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활동의 계기가 된 1991년의 「범죄피해급부제도발족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된 날인 10월 3일을 「범죄피해자지원의 날」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행하고 있다.⁹⁵⁾

2.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민간피해자 지원단체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에는 2014년 10월 기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공안위원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 단체로써 지정을 받은 46개의 민간피해자 지원단체와 그 지정을 지향하는 2개의 민간피해자 지원 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중 기부금 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공익사단법인에 38개 단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5개 단체가 인정되어 있다.

민간피해자지원단체는 경찰이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피하면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계발 활동, 전화상담, 면접상담, 법원과 병원 등에의 동행, 피해자·유족의 자조 그룹 지원, 자원봉사 상담원의 양성·연수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 등 피해의 조기경감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3.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早期援助団体)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早期援助団体)라 함은 「범죄피해 등을 조기에 경감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등이 재차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95) 認定NPO法人全國被害者と支援ネットワークのHP, <http://nnvs.org/> 참고

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고, 그 사업을 행하는 자로써 도도부현(都道府縣) 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단체를 말한다.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早期援助団体)의 구체적인 사업은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홍보·계발 활동, 범죄피해 등에 관한 상담에의 대응,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재정신청 보조, 물품의 대여 또는 공여, 역무의 제공 기타 방법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원조를 하고 있다.

범죄피해 등을 입은 직후의 피해자와 유족은 혼란과 정신적 쇼크 등에 의해 스스로 원조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찰본부장등으로부터 범죄피해의 개요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받아 피해자와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⁹⁶⁾

4. 경찰과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홍보 구축

범죄피해자자 요구하는 것들은 생활상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 및 법원에서의 공판에 관한 것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경찰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요구하는 범죄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법, 행정, 의료, 언론기관 등의 범죄피해자지원에 관계된 기관·단체 등이 상호 연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일본은 경찰과 관련된 관계기관·단체 등에서 구성된 「피해자지원 연락협의회」가 전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설립되

96)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29-30面.

어 있다. 또한 개개인의 사안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섬세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 경찰서 등의 단위로 연락협의회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은 민간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관계기관·단체와 연계하면서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의 중요함을 배우는 교실」을 개최하는 등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피해 실태와 범죄피해지원의 중요성 등에 관한 홍보 계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검찰청, 법원, 도도부현, 시정촌 등에서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 업무에 정통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변호사협회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⁹⁷⁾

97) 이외에도 일본 내각부 공생사회정책통괄관 범죄피해자등 시책(内閣府 共生社会政策統括官 犯罪被害者等施策) 홈페이지 코너에서는 범죄피해자등 기본계획 자료 등을 게재하고 있다(<http://www8.cao.go.jp/hanzai/index.html>). 일본 법무성 범죄피해자 코너에는 피해자등 통지제도를 시작으로 한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http://www.moj.go.jp/KEIJI/keiji11.html>). 그리고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검찰청 등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10. 12 검색).

제4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활동상 문제점⁹⁸⁾

제1절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운영상 문제

1. 피해자보호 전담 부서의 인력 배치상 문제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피해자를 위한 동반자로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동년 2월 209명의 인력을 배치하여「피해자 전담경찰관」체제를 구축하였다.⁹⁹⁾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인력 선발에 있어서도 상담심리·사회복지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선발하였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 된지 2015년 10월 말 기준으 로 8개월이 지났고, 다수의 현장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의 심층면담에 의 하면, 전담 부서의 인력 배치상 문제는 각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다. 다

9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활동상 문제점은 서울과 경기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의 현장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99)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에 11명, 전국 지방청에 57명, 치안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에 141명(141개 1급지 경찰서 각 1명씩) 총 209명을 신규배치 하였다. 특히, 지방청·경찰서 선발인력 중 66명(33.5%)이 피해상담사 등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하고, 65명(32.5%)이 수사부서의 경력자로 배치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수의 경찰관들은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 이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가 정착되고 범죄피해자들을 보호 및 지원 범위가 넓고, 다양해진다면 피해자전담 경찰 인력은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한 몇몇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인력이 부족함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홍보,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구축¹⁰⁰⁾ 등 1인의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혼자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고, 이로 인해서 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¹⁰¹⁾을 놓치게 된다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현재의 1인에 의한 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경찰서(1, 2, 3급지) 별로 일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가 많은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1급지 경찰서를 기준으로 1명의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2-3급지 경찰서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들의 지원이 1급지 경찰서보다는 다소 적어 부서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권역별로 경찰서를 묶어서 피해자를 지원한다

100) 인터뷰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지원제도 등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소극적인 성향이 강하여,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지원을 받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101) 골든 타임(golden time)은 프라임 타임(prime time)의 다른 명칭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며,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드라이브 타임(drive time)이나 골든 아워(golden hours), 피크 타임(peak time) 등으로도 불린다.

면 더욱 효과적이란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업무가 청문감사실에 소속되어 인권업무와 더불어 피해자 전담 업무를 겸직하다 보니 업무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물론 모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겸직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는 청문감사관실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 근무하는 것은 감찰 등 청문에 관한 업무와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업무는 이질적이며, 경찰관서의 타 부서 경찰관과의 보이지 않는 벽도 존재하기에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제기 되고 있다.

2. 피해자보호 전담 배치기준의 문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배치기준에 대하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은 상담심리·사회복지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사경과자를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 경력자, 피해자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능통한 자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청에서 제시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배치기준은 범죄피해자들이 이 기준에 맞추어 범죄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대상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범죄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지원을 바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적일 수도 있다. 즉, 범죄로 인한 신체적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이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원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퇴학처분으로 인해 졸업을 못한 청소년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범죄피해자들이 필요한 것은 취업이고, 학교에 복학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이 절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전담 경찰관에 대한 배치 기준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은 제5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피해자보호 시스템상의 문제

현재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지원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실시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업무를 총괄하는 범죄피해자대책실과 피해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방경찰청 아래에 수사민원상담관제도, 원스톱 지원센터, 케어팀 활동, 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 진술녹화실 설치, 통합피해자 안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충분한 존재의 이유가 있는 제도이지만 운영상에서 각 제도들은 피해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아울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의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¹⁰²⁾

즉, 범죄피해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의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의

102) 김순석,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의 활성화 방안, 경찰대학·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2014년 공동세미나, 2014. 6, 31-33쪽.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의 수사민원 상담관, 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 One-step지원센터, 케어팀의 업무가 연결되지 않아 범죄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 서포터제도는 일선경찰에게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경찰관도 상당수 존재하고 기존취지인 신변보호나 긴급구조보다는 상담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역할이 미미하다고 할 것이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본다.¹⁰³⁾

제2절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임무활동상 문제

1.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에 따른 예산의 전무(全無)

경찰에서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운영하고 그들의 활동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점은 당연히 피해자 지원 활동에 관한 예산의 부재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에 따르면, 32.7%가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 물론 의료지원(15%), 신변보호(10%), 상담서비스 제공(9.5%)도 있지만,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 지원 내용들 중 지원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꼽고 있다.¹⁰⁴⁾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전담 경찰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범죄 초기 단계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은 주장하고 있다.

103) 김순석, 위의 논문, 32쪽.

104) 이형세, 앞의 논문, 59쪽.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긴급하게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경찰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거의 전무(全無)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각 유관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신속한 범인 검거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야간에 조사한 피해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고, 심리적인 불안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예산 집행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경찰서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관내 택시조합이나 모범택시 협회의 무료 지원을 받아 범죄피해자들에게 안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사례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임시숙소」에 관한 문제인데, 인터뷰한 서울 및 경기청 산하 경찰서의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의 현실은 임시숙소에 필요한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 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고 있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밀린 숙박비 계산을 지속적으로 요청 받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는 등 예산 부재로 인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의 업무적인 활동상 고충은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 식비, 강력범죄 현장 정리비용, 긴급 생계비 및 장례비용 등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부대 비용들의 예산 확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의 부족

경찰은 2015. 2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전담 경찰관들 중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겪었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업무에 적응이 되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의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는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실현 가능하게 된다.

2015년 경찰은 피해자전담 경찰관 발대식 이후, 이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경찰교육원에서 ‘피해자 보호 전문화과정’을 신설하여 5월까지 신규 배치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교육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2주간의 교육은 예산상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1주간의 교육으로 교육 과정을 끝냈고, 하반기 보수 교육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교육은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 등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식 개선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 문제로 피해자에 관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시작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제대로 정착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2015년 4월 16일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 되면서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조사 단계에서부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을 것이다.

3. 피해자 지원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있어 한계점

경찰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관할 경찰서의 관내에 연계가 가능한 피해자 지원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업무 협약(MOU)등 협력체계 구축을 운영하고 있다.¹⁰⁵⁾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자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관내 다양한 지원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지만, 과연 이러한 업무 협약이 범죄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는 경찰관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초기에 시작된 업무협약도 성과지표로 잡혀있어서 실효적인 측면보다는 경찰서 성과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홍보 활동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문제점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실적지표에서 제외시키고, 업무협약 체결 자체도 없는 것이 낫고, 이를 대신하여 간담회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105)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단체와 MOU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협회·피해자지원협회와도 업무협약을 하였고, E-마트와의 피해자지원 기금 마련 협약,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공동이용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관·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물론 많은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은 이러한 피해자 지원 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면, 범죄 피해자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새벽 1-4시간 대에는 모범운전자 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귀가로 도움을 주고, 교통비 후불제 택시 협약, 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진료비·치료비와 약, 전문의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등을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업무 협약 등은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 협약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개선 방안

제1절 피해자 전담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보호·지원

1. '웨어러블 호출기'로 활용한 피해자 신변 보호의 정착

2012년 이후 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변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이 제기 되었다.

<표 10> 연도별 보복범죄 현황(2010-2015.7)¹⁰⁶⁾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7월)
특가법위반 (보복범죄 등)	175 (9.4)	162 (-7.4)	321 (98.1)	412 (28.3)	403 (-2.2)	251 (11.6)

특히,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849건으로 한해 평균 212건이 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보복범죄는 대부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는 보복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106) 경찰청, 내부자료, 2015 참조.

이에 2015년 10월부터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손목 시계형 긴급 호출기가 지급되고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및 가족·친족 등 신변 보호가 필요한 관련자들에게 '웨어러블(착용형) 긴급 호출기'를 지원하고 있다. 즉, 보복범죄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검찰에서만 지급하던 긴급 호출기를 경찰에서도 지급하도록 확대하였다. 긴급 호출기를 착용한 신변보호 대상자가 호출기의 'SOS 버튼'을 누르면 112에 바로 신고 접수가 되고 미리 지정해둔 보호자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위치정보가 전송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며, 또한 긴급호출기의 '전화 기능'을 이용해 현장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긴급호출기는 전국 검찰청과 특별시·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에 있는 1급지 경찰서 141곳에서 지급하였다.¹⁰⁷⁾

특히, 이 웨어러블 기기는 범죄피해의 우려가 많은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활동에 있어 필요하다. 이처럼 생활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통해 보복범죄 등 2차·3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변보호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스마트폰 등 최대 4인에게 신고가능하며, 대상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긴급 상황시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제 막 시작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치안을 한 단계 격상

107) 박지연, '웨어러블 호출기로 범죄 피해자·신고자 신변 보호', 법률신문, 2015. 9. 30일자 참조.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의 모든 기관에서 인식하고, 내실 있는 신변보호 대책이 운영 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신변보호가 남용이 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변보호의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웨어러블 기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서울에서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네트워크 CCTV를 시범 설치키로 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도 상황을 알 수 있어 보복범죄 대응 역량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배치기준의 개선 및 정원 반영

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상담심리·사회복지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사경과자를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경력자, 피해자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능통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청의 배치기준에 한정하기보다는 실제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 몇 가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배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친화력이 있고, 경찰관으로서 오랜 경험이 있는 분도 범죄 피해자가 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알기에 경찰관으로서의 오랜 경력

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것이 상담 등 심리적인 부분 뿐 아니라 법률적·경제적 등의 부분도 범죄피해자들이 원하고 있다.

인터뷰에 의한 실제 사례들을 종합하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 지원 내용들 중 가장 지원을 원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였다. 특히, 병원 진료 및 치료비 등의 의료지원을 비롯하여 신변보호, 생계에 관한 비용 및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취업 등에 관한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담이나 사회복지 등의 전공자와 수사부서 근무 경력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찰관으로서의 연륜과 경륜 등 모든 것들에 대한 폭 넓은 배치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배치기준의 핵심은 모든 것이 범죄피해자를 위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자격증, 수사부서 근무 경력, 대외협력에 관한 능통자, 피해자 업무에 대한 열정도 모두가 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은 전담조직 정원에 반영이 되지 않아 모두들 불안에 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들의 업무분야에서부터 안정적인이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이 안정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담조직이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

경찰에게 요구되는 피해자 보호활동 중 가장 직접적인 활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이 있다.

최근의 범죄 양상이 지능화·흉포화 되고, 지난 5년간 보복범죄 발생률이 약 2.5배 증가함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정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보복범죄의 증가에 대비하여 경찰에 의한 신변 보호 제도가 중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적 정비와 신변보호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앞에서 설명한 '웨어러블 호출기'로 활용한 피해자 신변 보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제작, 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상 구체적 기준 명시 등 신변보호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대상자의 위험성·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신변안전 조치 유형 마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¹⁰⁸⁾

그러나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범죄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

즉, 잔혹하고 흉포한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을 본다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을 위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의견을 통한 정책 발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8) 이형세, 앞은 논문, 57-58면.

4.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교육 역량 강화

2015년 4월 16일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 되면서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기존에는 ‘피의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등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동법 제8조의2에서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둘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셋째,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조사 단계에서부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자전담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 등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전담 부서의 신설과 더불어, 각 경찰서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선발하고 배치하였다. 그리고 2015. 2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만났던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 중 피해자 보호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경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답변하였으며, 2-3개월의 실무적 경험을 겪은 이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업무에 적응이 되었다고 인터뷰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 다수가 대답하였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보호는 피해자를 상대하는 모든 경찰관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활동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우리 경찰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발대식 이후, 이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경찰교육원에서 ‘피해자 보호 전문화과정’을 신설하여 5월까지 신규 배치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교육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2주간의 교육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1주간의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끝냈고, 하반기 보수 교육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교육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있어, 인터뷰한 대부분의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은 교육을 통한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 등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따라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분기당 1주일씩 아니면 최소한도 전·후반기 1주일씩은 교육을 받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2015년 전반기에 받은 교육이 정말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을 준비하는 경찰교육 기관은 피해자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피해자를 범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전담 경찰관들도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식 개선을 함양 시킬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 임용 단계에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모든 경찰관들의 인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신입 경찰관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아주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

제2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확대

그 동안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위해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검찰의 경우 2015년 1월 20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하여,¹⁰⁹⁾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접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치료비, 심리치료비,¹¹⁰⁾ 생계비,¹¹¹⁾ 학자금,¹¹²⁾ 장례비¹¹³⁾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재

109) 대검찰청 예규 제767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2015. 1. 20 제정.

110) 검찰에 의한 경제적 지원의 유형과 범위로 치료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치료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원칙적으로 연 1,200만원 또는 총 3,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는 치료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심리치료비의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상담비용이다.

111) 생계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3개월까지 지원가능하다. 다만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며,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1회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112) 학자금의 경우에는 학기당 초등 50만원, 중등 80만원, 고등·대학생 100만원 등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연 2회 지급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

산상의 손실만을 입는 범주는 제외하고 있다.¹¹⁴⁾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나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행위로서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일 것을 요한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경제적 지원의 신청은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3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액수가 기존대비 아래 표에서와 같이 약 33.3% 대폭 인상 상향되었다.¹¹⁵⁾

<표 11> 범죄피해구조금 액수의 증가¹¹⁶⁾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망피해자 유족	최대	약 6,800만원	→	약 9,100만원
	평균	약 3,000만원		약 4,0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	최대	약 5,700만원		약 7,600만원
	평균	약 1,300만원		약 1,800만원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게 되면 생계가 단절되어 자살이나 이혼, 가족의 해체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은 별도로 1년간 지급한다.

113) 장례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인 유족에게 3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114) 치료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5주 미만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115) ①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②범죄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6)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5. 3. 10 보도자료 참조.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최대 9,1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범죄 직후에 닥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고 있고, 그 결과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감소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칠곡계모사건」¹¹⁷⁾에서도 사망한 아동의 언니에게 유조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2,956만원의 지원을 하였다.¹¹⁸⁾

앞의 표에서 본바와 같이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의 경우 최대 약 9,100만원, 장해·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최대 약 7,6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¹¹⁹⁾

이처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이전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의 인상은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다수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완화 등 더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117) 2013년 8월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계모가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친아버지가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2015년 9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모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19)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홍세미,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법률신문, 2015. 9. 10일자 참조.

118)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 2015. 4. 29 보도자료 참조.

119)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 연구」에 의하면,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4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평균 7,9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2. 구상권 행사를 통한 적극적 회수율 확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법과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처럼 범죄자에게 강력하게 고통을 주는 것도 피해자 보호이지만, 범죄자로부터 받아내는 구상금과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피해 구조금도 또 다른 피해자 보호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피해구조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범죄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구상금 회수율은 2%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인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권 청구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수는 315억5,600만원(1,434건)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범죄가해자로부터 회수한 구상금은 6억5,000만원(67건)으로 회수율이 2.1%에 불과했다.

2014년의 경우 구조금으로 70억7,000만원(331건)이 집행됐다. 정부가 이중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 65억9,400만원(301건)이었으며, 실제 회수한 구상금은 2억1,000만원(23건)이었다. 2015년 6월 기준 42억6,800만원(184건)이 구조금으로 지급됐으나 구상권 청구 금액은 38억3,400만원(170건), 실제 회수 금액은 1억7,100만원(23건)이었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범죄 때문에 사망하거나 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서 받아내는 제도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재원은 2011년부터 시행된 별도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근거해 국가가 거두어들인 벌금 중 일부, 국가가 대신 취득

한 구상금 등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의 구상금 회수율이 낮으면 피해자보호기금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구상권 회수의 어려움은 다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집행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¹²⁰⁾

법무부는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상금 회수가 쉽지 않고, 구상 업무에만 집중하기엔 업무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관련 제도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경찰과의 협조, 그리고 전담기구 등의 설치를 통해 재산조회권한이나 수사권한을 갖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충분히 실효적인 대안으로서 구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효성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

범죄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살인사건 등 강력·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사건 및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의료 지원을 병행하고, 법률 상담을 통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들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관련 모든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시스

120) 김현빈, 범죄피해자 구조금 느는데, 범죄자 돈 회수는 ‘찝끔’, 한국일보, 2015. 9. 9 일자 참조.

템을 구축해야 만이 제대로 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청은 주요 지원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¹²¹⁾ 각 경찰서 단위에서는 지역내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여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업무 협약이 실적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보다는 관련 기관하고 업무 협약에 치중한 면도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유관기관과 형식적인 업무 협약보다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들어 다수의 경찰관서에서는 형식적인 업무 협약보다는 범죄피해자들이 제대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경제적·법률적 등 전문기관과 실무적인 업무 협약에 치중하여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현실적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경찰은 유관기관인 검찰·법무부·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광범위하게 협업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도 형식적인 회의 및 간담회가 아니라, 정부 부처간,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인 범죄피해 초기에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올바르게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121) 2015년 경찰청의 업무협약(MOU)으로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손해보험협회 등과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 협력, 지원활동 정보 공유, 피해자 지원활동 홍보 협조 및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공조 강화,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 제도의 도입 제고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2004년 법무부는 각 산하 검찰청을 통하여 민간단체인 한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Korea Crime Victim Support Center)의 설립이 시작되었고,¹²²⁾ 2006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전국에 58개 지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6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될 당시에 지속적으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금은 너무 부족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

1988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거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과실행위는 제외)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중장해 피해를 입은 유족이나 당사자는 가해자의 불명이나 무자력(無資力)으로 피해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다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였다.

당시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은 살인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에게 최고 한도 1천만 원, 상해 피해자 구조금은 1급 장애 판정시에는 6백만 원, 2급 장애 판정시는 4백만 원, 3급은 3백만 원이 전부였다. 1급 장애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불가능한 상태로 가족이 평생 6백만 원의 국가구조금으로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금액이었다.¹²³⁾

122) 한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Korea Crime Victim Support Center)는 금전적 지원·심리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통을 치유한다는 목적에 따라 설립되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대규모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경북 김천에 처음 생겼다.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포함하여 전국에 58군데가 있다. 사단법인으로 지방 검찰청사 내부에 사무실이 있다.

123) 2008년 10월 20일에 발생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은 논현동의 D고시원에 화

또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여 명의 부유층 노인과 여성들을 망치나 칼 등 각종 잔혹한 방법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유영철의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자들인 유족들에게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생활을 책임지던 가장이 살해된 가정은 이미 가정이 분해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가정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도 찾은 유족 중에서는 정신적 고통과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유족까지 생기게 되어 잔인한 강력범죄로 인하여 결국 2차, 3차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¹²⁴⁾

이후 2008년 법무부에 건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선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연구와 미국(NOVA), 일본(NCVI), 유럽연합(VSE), 캐나다 등의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2009년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선포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홍보와 참여로 사회의 책무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피해자를 보호 지원 하는 센터 종사자 및 자원 봉사자, 기부금 납부자를 격려하는 의미를 주었다. 이후 센터 종사자들의 역량을 확대 시키는 전문가 워크숍, 세미나, 교육을 통하여 전국의 센터간의 통합 교류 및 효과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인권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유엔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법절차상의 알 권리 선언 및 사회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게 되었다.

선진 연합회 미국(NOVA), 유럽연합(VSE), 일본(NCVI)의 대표 초청 연설과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범죄로 부터의 피해에 대한 보호 지원

재를 일으킨 뒤, 화재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살인 사건이다. 특히, 칼에 무차별적으로 찔린 피해자들은 중국동포 2명을 비롯해 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사망하기 전 치료한 병원비 5백여만 원, 장례비 3백여만 원의 금전적 부담을 갖게 되었으나 국가 구조금 1천만 원으로 피해자 유족이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보상금이었다.

124) 이용우,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토론문), 경찰대학, 2015. 10, 250쪽.

의 업무협약(MOU)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 인권이 향상 되었으며, 국가 구조금도 확대 되었다.¹²⁵⁾

특히,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 바이스링(Weisser Ring)이라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는 1976년 창설되었고 독일의 중부 마인츠에 있으며, 독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에도 관련된 조직이 있다.

이 바이스링(Weisser Ring) 회원가입을 통한 단체이며, 회원들은 소액의 회비를 지불 할 수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이 단체는 독일에서의 최초의 피해자 지원단체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가장 성공한 단체이다.

최근 이 단체는 약 53,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피해자를 지원하며 이러한 업무를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수행한다. 그들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해자지원 단체이며, 현금과 다른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¹²⁶⁾

우리도 이러한 독일의 바이스링과 같은 피해자 지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성공적인 제도는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 현재 선진 외국에서 확대 지원하고 있고, 우리 현실에서는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마약, 인신매매, 아동 및 장애인 등의 실종,

125) 매년 확대되는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금은 물론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정신적 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 ‘스마일 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사건현장 청소, 치료비 전액지원, 임대 주택지원, 간병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유자녀 장학금지원, 취업지원,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운영, 법률적인 지원으로 공판과정 모니터링, 법정 동행, 구조금, 배상 등 안내 등 빠른 선진화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용우,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토론문), 경찰대학, 2015. 10, 251쪽.

126) Gerd F. Kirchhoff, Victim and Police: Situation in Germany, 제5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the Role of Police(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 경찰대학, 2015. 10. 2, pp.129-130.

자살, 공익 피해자 등의 유족을 위한 피해자 지원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경찰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를 기대해 본다.

5. 범죄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구축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문제점으로선 종전까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경찰청 차원의 피해자 지원 정책 발굴이나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부족했다는 점,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여러 학자들의 글이나 논문, 기고 등에서 지적되고 있다.¹²⁷⁾

이는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복범죄의 우려를 갖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타 부처 주관의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자를 특정범죄 피해자로 제한하거나 야간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의 생활권역에서 거리가 멀어 이용을 꺼려하는 등 입소 조건 및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호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운영부처에서는 피해자 입소조건 완화 및 보호시설의 추가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 발생 직후 긴급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서 단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²⁸⁾

127) 이동희, 앞의 논문, 243쪽.

128) 이형세, 앞의 논문, 58쪽.

이를 위해서는 경찰서별로 사용하지 않는 치안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 조선족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¹²⁹⁾을 계기로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경찰 주도의 안정적인 보호시설인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만의 특수 시책으로 경찰 단계에서 긴급한 피해자 쉼터로서의 역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전용 조사실, 유관기관 근무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지원센터가 전 지방경찰청으로 확대가 된다면, 국가 전체로서는 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의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심층 면접에 의하면,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본인들을 위한 보호나 지원 제도 즉, 형사절차상의 권리 등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들은 범죄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상처 등으로 인해서라고 생각된다.

129) 이 사건은 2012년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조선족 동포 보복살인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 여성을 경찰 지구대로 동행하여 데려왔지만, 상담 후 보호할 곳이 없어 귀가 조치하였으나, 약 30분 후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보복 우려가 있는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하루 동안 머무르는 곳으로 2013년 3월 설립 이후 2015년 12월 말까지 모두 460명이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86.5%(398명)를 차지했다. 윤경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파이낸셜뉴스, 2015. 3. 5일자 참조.

그 결과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지원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5. 4. 16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되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의 피해자원 욕구조사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지원으로 사건절차에 대한 설명 등 정보제공이 18.8%로 나타나고 있어, 범죄 피해자의 욕구에 맞춘 경찰 활동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정보제공 안내서 제작, 형사사법시스템 내 구체적 절차 등 시행 방안 마련, 범죄피해자보호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정보제공을 통해 형사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¹³⁰⁾

더불어 살인·강도·강간·방화·중상해의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제한되어 있던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¹³¹⁾의 대상을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상 피해자 접근성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0) 이형세, 앞의 논문, 59쪽.

131) 2013년 8월부터 5대 강력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 내역을 윈스톱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제6장 결 론

우리 경찰은 2015년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발족하고, 범죄 피해 유형, 범죄피해자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경찰은 상반기인 3월에서 6월까지 총 9,237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8,860건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연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중 경제적 지원의 총액은 약 24억 상당으로 1건당 약 134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신변보호 종합대책 추진 이후,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 신변경호, 순찰강화, 안전숙소의 제공 등 345건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특히, 신변보호요청대상자의 인적사항, 신변보호요청 사유 등을 사전에 112상황실 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상자가 112신고시 현장경찰이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는 112긴급신변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변보호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최초의 기관으로 범죄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초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신체적·정신적·심리적인 안정을 확보하여 빠른 피해 회복과 조속히 일상 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은 현재보다는

10배 이상의 예산 확보와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경찰청 담당부서는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 확보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현재 모든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경찰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였을 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범죄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연계망 구축 및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범죄의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피해자 보호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은 그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재범을 방지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 활동 범위 확대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과의 정보교류를 이용하여 한 단계 더 피해자들에게 다가 가며, 그 결과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최초의 기관으로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각 기관에 연계·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과 같이 하고, 항상 그들이 필요할 때 옆에 있고,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경찰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경찰에 의한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호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강경래, 민간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피해자학 연구, 2006.
- 강경래(역), 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일본에 있어서 경찰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 2006.
- 경찰청·(사)코바포럼, 경차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발전 방향,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4.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14. 2.
-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시책, 2015. 7. 21.
- 공정식, 범죄와 피해 심리분석기법, KOVA, 2014
- 김성돈,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 동향, 피해자학 연구, 1999.
- 김순석,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의 활성화 방안, 경찰대학·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2014년 공동세미나, 2016. 6.
-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9
- 김지선, 2010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김지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쟁점들, 피해자학 연구, 2006
- 金哲洙, 憲法學新論,(第20全訂新論), 博英社, 2010.
- 김학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4.
- 류경희,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융합 행정, 한국공안행정학회·경찰교육원 공동개최 제41회 학술대회자료집, 2013.

- 문성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보호의 확대,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 박광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 연구, 2009.
- 박병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일본 경찰의 피해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 공안행정학회, 2004
- 박호정,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법무부,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폭 확대, 2015. 3. 10.
- 법무부,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세계적 성공모델로 소개, 2015. 5. 14.
- 신혜리·박병식,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 심현주, 범죄피해자 Care의 실제-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 안희준,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동향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2009.
- 양문승,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정상과학으로서의 모색, 피해자학연구, 1999.
- 吳世敬, 法律用語辭典, 法典出版社, 2010. 2.
- 오영근·이천현,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005.
- 오영근·이천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9.
- 오오타 타츠야, 일본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지원과 경찰의 역할, 경찰학연구, 2012.

- 윤상민,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006.
- 이동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제5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10. 2.
- 이성호·김상균·신석환,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 이진국,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2007.
- 이용우,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토론문), 경찰대학, 2015. 10.
- 이형세,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고찰과 발전방안, 경찰청·(사)코바포럼 공동학술세미나, 2015. 4.
- 장규원, 피해자학 강의, (주)살림출판사, 2011. 9. 29.
- 정희정,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주요 제문제, 대검찰청, 2014. 3.
- 조윤희 외 역, 피해자학, 도서출판 그린, 2012.
- 황지태·노성호,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 형사정책연구원, 2010.

II. 외국문헌

警察庁,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警察庁, 2014版.

Gerd F. Kirchhoff, Victim and Police: Situation in Germany, 제5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the Role of Police(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 경찰대학, 2015. 10. 2

II.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 헌마 3, 헌재판례집 제1권.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 헌마 91 결정.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 헌마 262 결정.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 헌마 306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 헌마 136 결정.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 헌마 7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0. 9. 6. 선고 00 헌마 550 제2지정재판부.

IV. 기타

김현빈, 범죄피해자 구조금 느는데, 범죄자 돈 회수는 ‘찔끔’, 한국일보, 2015. 9. 9.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 2015. 4. 29 보도자료.

박지연, '웨어러블 호출기'로 범죄 피해자·신고자 신변 보호, 법률신문, 2015. 9. 30.

박지연, 한국의 '피해자 미란다 원칙' 유럽에 소개, 법무부, 법률신문, 2015. 5. 18.

윤경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파이낸셜뉴스, 2015. 3. 5.

홍세미,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법률신문, 2015. 9.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291&cid=43667&categoryId=43667>(2015. 10. 6. 검색).

<http://www8.cao.go.jp/hanzai/index.html>.

<http://www.moj.go.jp/KEIJI/keiji11.html>.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10. 12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6927&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2015. 10. 6. 검색).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6 검색).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2015. 10. 7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A6%B0>(2015. 10. 6.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BF%84_%EC%A7%80%ED%95%98%EC%B2%A0_%EC%82%AC%EB%A6%B0_%EC%82%AC%EA%B1%B4(2015. 10. 6.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622&cid=40942&categoryId=31787>
(2015. 10. 6. 검색).

認定NPO法人全國被害者と支援ネットワークのHP, <http://nnvs.org/>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992&cid=42136&categoryId=42136](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992&cid=42136&categoryId=42136)(2015. 10. 20 검색).

책임연구보고서 2015-08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

2016년 9월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